과학기술정보통신부

NRF 한국연구재단

2027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신청요강

▸ **2027년도 기초연구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등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 및 별첨(매뉴얼) 자료 참조

※ 연구계획서 작성 시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제출된 연구계획서 및 대표적 연구실적 등은 재단 AI 기반 연구개발 관리·평가 시스템·제도의 개발·도입을 위한 내부 테스트 및 AI 활용 현황 점검·통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 여부 및 AI 내부 테스트 결과와 AI 활용 현황 점검·통계는 과제 신청 및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출 자료는 내부 시스템(내부 LLM 등)에서만 처리되며, 외부 AI 서비스 등으로 전송·제공되지 않습니다.)

2026.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국 연 구 재 단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2027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접수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그 외 사업*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7.(월) 18:00:00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8.(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9.(수) 18:00:00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10.(목) 18:00:00
신청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완료	

* **리더연구**(유형B(Top-tier), 유형A), **핵심연구**(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진연구**(유형B, 유형A, 지역장기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복귀·유치)

※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2026. 12. 7. 18:00:00 / 그 외 사업: 2026. 12. 8. 18:00:00)까지 계획서 등록(업로드) 및 기관 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됨

※ 접수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접수 미완료 시 별도 구제 없음.

※ 개인연구 2차(핵심연구(전략형, 기본연구B, 기본연구A, 신진연구(신진연구자 인프라))는 별도 안내

②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연구자 포함),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2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1877-2041, 042-862-1500) 또는 IRIS 홈페이지>참여소통>R&D 신문고**

③ 2027년도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지원계획

	2026년			2027년		
개인기초연구	우수연구	리더연구		우수연구	리더연구	
		유형 B (Top-Tier)			유형 B (Top-Tier)	연 16억 내외 / 9년
		유형 A			유형 A	연 8억 내외 / 9년
		핵심연구			핵심연구	
		유형 C			유형 C	연 3억 내외 / 최대 5년
		유형 B			유형 B	연 2억 내외 / 최대 5년
		유형 A			유형 A	연 1억 내외 / 최대 5년
		도약형			도약형	연 2.5억 내외 / 3년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연 2억 내외 / 10년
		글로벌 매칭형			글로벌 매칭형	연 1.5억 내외 / 최대 3년
		도전형			-	
		전략형			전략형	연 2억 내외 / 최대 3년
		기본연구 B			기본연구 B	연 0.7억 내외 / 최대 5년
		기본연구 A			기본연구 A	연 0.5억 내외 / 최대 5년
		신진연구			신진연구	
		유형 B			유형 B	연 1.5억 내외 / 최대 5년
		유형 A			유형 A	연 1억 내외 / 최대 3년
		-			신규 지역장기연구	(1년차) 연 3억원 내외 (2~10년차) 연 1.5억원 내외 / 10년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연 1억 ~ 5억 / 1년
		세종과학펠로우십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			국내	연 1.3억 내외 / 5년
		국외연수			-	
		복귀·유치			복귀·유치	연 1.3억 내외 / 5년

※ 표시는 내내역사업, 표시는 신규사업, 표시는 일몰사업

연구과제 신청 체크리스트

신규과제 신청 시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문제없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전/후 준비사항을 **모두 충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신청요강에 명시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검토 시 탈락될 수 있음.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확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신청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사업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모두 조치**하였고, 미비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가입·이용방법에 관한 질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콜센터 1877-2041, 042-862-1500로 문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18:00:00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00:00전까지 접수를 완전히 완료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최종확인] 버튼 클릭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함을 알고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접수시작 시간이 접수시작일 14:00:00부터임을 알고 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을 인지하고 있다.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를 수행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리더연구는 리더연구 외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이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수행 불가*)함을 확인하였다. *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신청하는 사업의 **평가방법 및 일정**을 확인하였다.(핵심연구는 유형에 따라 평가방법 상이)	
사업 신청 시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 것(accepted; in press 포함)만을 기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 (해당 시, P.22 참고) 성과우수자 우대사항 대상자는 IRIS 계획서 접수화면에서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를 통해 추가 제출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함을 알고 있다.**(대상자여도, 주관기관 마감기한 내에 미제출시 우대사항 미적용) * IRIS 계획서 접수화면 > [연구기관] 탭 > 우대감점 증빙서류에 첨부	
개인기초연구 직접비, 간접비 분리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연구자는 과제 신청 시 직접비만 신청**하는 것임을 숙지하였다. ※ 간접비는 선정 이후 재단이 산정하여 별도 지급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만 인정함을 확인하였다.	

신청 중 체크리스트	확인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주관연구기관 반려 불필요) [회수] 버튼 클릭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을 알고 있다.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사업별로 제시된 **연구계획서 작성 분량제한을 준수**하였고, **작성분량 초과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신청하는 사업의 **연도별 직접비 신청금액과 금액단위를 정확히 입력**하였다. ※ 단위 오입력시에도 별도 구제 불가능	
주관연구기관 접수마감 이후에 데이터(접수분야, 연구비 등) 및 파일은 변경이 불가함을 알고 있다.	
신청 후 체크리스트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사업, 연구유형**에 **제대로 지원**하였다.	
업로드 한 **연구계획서 파일에 대한 확인(최종본, 암호해제, 오류확인)을** 하였다. ※ 업로드 파일 전체 용량은 2GB(각 첨부파일별 용량은 500MB)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목 차

Ⅰ. 2027년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01
2. 지원 내용 ····· 01
3. 공고 및 신청·선정 과제 수 ····· 03
4. 2027년 추진 일정 ····· 04
5. 2027년 중점 추진 방향 ····· 06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규과제 지원 안내 ····· 09
2. 신규과제 지원 규모 ····· 09
3. 신청 및 수행 제한 ····· 10
4. 신청 절차 및 방법 ····· 13
5. 신청기간 및 제출자료 ····· 14
6. 우대·감점제도 운영 ····· 22
7. 공통 유의사항 ····· 23
8.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유의사항 ····· 25
9.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유치트랙) 유의사항 ····· 29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절차 및 방법 ····· 31
2. 평가항목 및 내용 ····· 32
3. 차별성 검토 ····· 35

Ⅳ.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 36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 38

Ⅴ.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 40
2. 리더연구 연구관리사항 ····· 41
3. 지원중단 과제 관리 강화 ····· 43
4. 성과관리 ····· 44

Ⅵ. 기타 사항 ····· 45

붙임 1. 개인기초연구사업 FAQ ····· 54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지 PBS 폐지 정부출연연구소 목록 ····· 87
3.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88
4.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 93
5.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책임)전문위원(CRB/RB)분야 ····· 97

Ⅰ 2027년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 개인기초연구 간접비 분리지급 시행에 따라 **연구비는 직접비만 신청하며 간접비는 선정 이후 재단이 산정하여 별도 지급,** 자세한 내용은 [Ⅳ-1. 연구비 지급] 참조

사 업			세부 내용	
우수연구	리더연구	유형B (Top-tier)	지원대상	■ 국내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현재 리더연구를 수행하면서 `27년 3단계 진입 예정인 리더연구자도 신청 가능
			연구비	■ 연간 직접비 12.8억 원 이내(단, 1차년도는 9개월분 연구비 지원), 간접비 별도 ※ 1차년도는 연간 직접비 9.6억 원 이내
			연구기간	■ 9년(5+4)
		유형A	지원대상	■ 국내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연구비	■ 연간 직접비 6.4억 원 이내(단, 1차년도는 9개월분 연구비 지원), 간접비 별도 ※ 1차년도는 연간 직접비 4.8억 원 이내
			연구기간	■ 9년(5+4)
	핵심연구	유형C 유형B 유형A	지원대상	■ 국내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연구비	■ **유형C:** 연간 직접비 2.4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유형B:** 연간 직접비 1.6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유형A:** 연간 직접비 0.8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연구기간	■ 1~5년
		도약형	지원대상	■ 기초연구(핵심연구(유형B,C)[1], 신진연구(유형B)[2]) `27년 종료예정 연구자 ※ 중견 후속 · 중견연계 신진후속 연구책임자 포함 1) 舊중견유형1·2, 2) 舊우수신진 단,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폐지 출연연 신청 불가
			연구비	■ 연간 직접비 2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연구기간	■ 3년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지원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내(2012.1.1. 이후 취득)**인, 국내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연구분야	■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연구 주제를 다루는 전 분야(신생·미개척분야 포함)
			연구비	■ 연간 직접비 1.6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연구기간	■ 10년(5+5)

사 업			세부 내용	
	신진연구	유형B 유형A	지원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20.1.1. 이후 취득)** 또는 만 39세 이하(1987.1.1. 이후 출생)인,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및 국(공)립*·민간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2022.1.1. 이후 임용)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단, 신청 시 **연구자 과제참여 확약서**의 **최초 조교수 이상 직위 임용 5년 이내 확약서**를 작성하여 IRIS [첨부파일] 탭에 업로드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평가위원에게 제공 가능)
			연구비	■ **유형B:** 연간 직접비 1.2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유형A:** 연간 직접비 0.8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연구기간	■ **유형B:** 1~5년 ■ **유형A:** 1~3년
		지역장기연구	지원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20.1.1. 이후 취득)** 또는 만 39세 이하(1987.1.1. 이후 출생)인, 국내 지역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2022.1.1. 이후 임용)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단, 신청 시 **연구자 과제참여 확약서**의 **최초 조교수 이상 직위 임용 5년 이내 확약서**를 작성하여 IRIS [첨부파일] 탭에 업로드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평가위원에게 제공 가능) ※ **(지역대학 기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외에 해당하는 대학(4대 과기원 및 포항공과대학교 제외) 또는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하여 분교로 허가된 대학 중 서울, 인천, 경기지역 외로 지역이 분류되는 대학
			연구비	■ **(1년차)** 연 2.4억원 이내 X 1년 ■ **(2~10년차)** 연 1.2억원 이내 X 9년
			연구기간	■ 10년(5+5)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트랙	지원대상	■ 국내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①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20.1.1. 이후 취득)** 또는 ②만 39세 이하(1987.1.1. 이후 출생)인 연구자 중,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이 아닌 자 또는 국(공)립*·민간연구소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만 신청 가능
			연구비	■ 연간 직접비 1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세부내용은 [Ⅱ-8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유의사항] 참조) ※ 연구책임자 인건비 최대 65백만원+α(자녀수당)
			연구기간	■ 5년
		복귀·유치트랙	지원대상	■ 해외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①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20.1.1. 이후 취득)** 또는 ②만 39세 이하(1987.1.1. 이후 출생)인 연구자 중,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이 아닌 자 또는 국(공)립*·민간연구소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 국내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신청 가능
			연구비	■ 연간 직접비 1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연구기간	■ 5년

*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폐지 출연연 신청 불가

** 출산·육아 휴직기간은 박사학위 취득 후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15년 이내 / (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7년 이내'**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단, 신청 시 **경력, 역량 증빙자료**의 출산육아 휴직기간 박사학위 취득 제외 확약서를 IRIS [첨부파일]탭에 업로드하여야 함)

*** 전임교원은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의 인정기준 적용

3 공고 및 신청·선정 과제 수

○ **(공고)**

- 개인연구 1차: 리더연구(유형B(Top-tier), 유형A),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진연구(유형B, 유형A, 지역장기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복귀・유치)
- 개인연구 2차: 핵심연구(전략형, 기본연구B, 기본연구A), 신진연구(신진연구자 인프라)

○ **(신청)** 개인연구는 연구책임자로 아래의 원칙에 따라 신청 가능

구분		사업명	비고
1차 신청	개인연구	리더연구(유형B(Top-tier), 유형A),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진연구(유형B, 유형A, 지역장기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복귀·유치) 중 1과제	리더연구와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中 1개)는 중복신청 가능
	글로벌 매칭형	글로벌 매칭형(독일) 내 1과제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2차 신청	개인연구	개인연구(핵심연구(전략형, 기본연구B, 기본연구A)) 중 1과제 ※ 개인연구 1차 공모 과제 신규 선정 연구자는 당해연도 개인연구 신규과제 추가 신청 불가	당해연도 교육부 지역중심혁신지원, 학술연구인재육성(舊 학문후속세대지원, 학술연구혁신지원) 신청자는 개인연구 2차 신청 불가
	신진연구자 인프라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창의인프라, 첨단인프라) 중 1과제	개인연구사업·집단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본 사업 기수혜자 및 지역장기연구 수혜자는 신청 불가

○ **(선정)** 신청과제 중 **개인연구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선정***

구분	사업명
개인연구	과기정통부 소관 우수연구(리더연구(유형B(Top-tier), 유형A),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전략형, 기본연구B, 기본연구A), 신진연구(유형B, 유형A, 지역장기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복귀·유치) 교육부 소관 지역중심혁신지원, 학술연구인재육성

*** 연구책임자로 동시 선정될 경우, 상위사업 우선 선정**

- 집단연구 > 리더연구 / 리더연구 > 핵심연구 ※ 집단연구와 핵심연구는 동시 선정 가능

* 집단연구 : 국가연구소(NRL2.0), 미래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기초연구소(G-LAMP),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

<개인연구 신청·선정 과제 수>

공고 차수	사업명		공고시기	신청		연구 개시일
				신청과제 수	신청 시기	
1차	리더연구	유형B(Top-tier), 유형A	’26.11월	1개[주]	’26.11월 말 ~12월 초	6.1.
	핵심연구	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한우물파기				3.1.
	신진연구	유형B, 유형A, 지역장기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				
		복귀·유치				9.1.
2차	핵심연구	전략형, 기본연구B, 기본연구A	’27.3월	1개	’27.4월 중	9.1.

주) 리더연구와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中 1개)는 중복신청 가능

※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경우 기초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과제 신청 시 기술특성·성숙도에 따라 유형화한 국가전략기술은 작성하지 않음

4 2027년 추진 일정

□ 리더연구(유형B(Top-tier), 유형A)

구 분	내 용
2026년 11월 5일(목)	2027년도 신규과제 공모
2026년 11월 25일(수) ~ 2026년 12월 8일(화)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연구자 접수마감일)
2026년 11월 25일(수) ~ 2026년 12월 10일(목)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7년 1월 중	1차 예비평가(토론평가) 실시
2027년 2월 중	2차 본 평가 대상과제 선정통보
2027년 2월 말	영문 요약서 제출
2027년 3월 ~ 2027년 4월	본 연구계획서 접수마감, 해외평가 실시
2027년 5월 초	본 평가(발표평가) 실시
2027년 6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27. 6. 1.)**

□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구 분	내 용
2026년 11월 5일(목)	2027년도 신규과제 공모
2026년 11월 25일(수) ~ 2026년 12월 7일(월)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연구자 접수마감일)
2026년 11월 25일(수) ~ 2026년 12월 9일(수)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7년 1월 ~ 2027년 2월	선정평가
2027년 3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27. 3. 1.)**

□ **핵심연구(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진연구(유형B, 유형A, 지역장기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구 분	내 용
2026년 11월 5일(목)	2027년도 신규과제 공모
2026년 11월 25일(수) ~ 2026년 12월 8일(화)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연구자 접수마감일)
2026년 11월 25일(수) ~ 2026년 12월 10일(목)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7년 1월 ~ 2027년 2월	선정평가
2027년 3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27. 3. 1.)**

□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유치)**

구 분	내 용
2026년 11월 5일(목)	2027년도 신규과제 공모
2026년 11월 25일(수) ~ 2026년 12월 8일(화)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연구자 접수마감일)
2026년 11월 25일(수) ~ 2026년 12월 10일(목)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7년 1월 ~ 2027년 4월	선정평가
2027년 9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27 .9. 1.)**

※ 상기 모든 사업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2027년 중점 추진 방향

1 장기·안정적 연구 지원

1.1. 기초연구 저변 확대 및 견고한 연구 안전망 구축

○ **(수혜 확대)** 역대 최대규모의 기초연구 예산 확보(2.91조원), **지원과제 수 확대(1.5만→1.8만개)**로 **연구자 수혜 확대 지속 추진**

※ '26년 기초연구비 확대에 따른 수혜율 증가세('25년 17.3% → '26년 19.9%) 지속 유지

○ **(연구안전망)** '26년 복원한 **기본연구 신규과제 규모(2천개)를 지속 유지**하고, **연구기반 취약 연구자 우대*를 지속**하여 견고한 연구안전망 구축

* 생애 첫 수행 및 경력단절 가점 부여(5점), 지역 연구자 연구비 비율 40% 이상 지원 등

1.2. 청년연구자 성장 지원

○ **(박사후연구원 지원)** 세종과학펠로우십을 **국내 및 복귀·유치 지원 중심으로 개편**, 성장 잠재력이 큰 박사후연구원의 연구기회를 지속 지원

○ **(신진연구자 지원)** **신진 연구자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1]하고, 신진연구자인프라지원사업에서 **평가 및 성과활용 보고를 축소**하여 **행정부담을 낮추며**[2], **수행포기 정당 사유를 추가**하여 **제재에서 구제**[3]

1] ('26년) 4,975억원(3,643개) → ('27년) 5,834억원(3,936개)
2] 최종평가 면제 및 성과활용 보고 기간 단축(5 → 3년)
3] 구매예정 장비비가 대외여건으로 20% 이상 증가시 수행포기 정당 사유로 명시

○ **(장기연구 지원)** 우수한 연구가 단절 없이 지속되도록 **한우물파기 과제를 확대**(31개→40개)하고, 우수성과자가 **최대 11년까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과제(도약형) 지원기준 정비***

* 핵심·신진 후속과제 수행자도 지원 가능(핵심·신진 5년 + 후속 3년 + 도약형 3년)

1.3. 지역 연구역량 강화

○ **(유입·정착)** **젊은 유망 연구자**가 **지역에 유입·정착**하여 지역 혁신역량의 중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 지원하는 **지역장기연구*** **신설(100개)**

* 초기에 연구에 필요한 **장비구축을 지원(3억원)**하고, 이후 장비를 활용한 장기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9년간 지원(연 1.5억원)**

※ 미선정자는 **재도전 가능하도록 신진인프라지원사업 선정 시기 조정**('26 상반기 → '27 하반기)

<신진 지역장기연구 사업 개요>

구 분	`27년 지원규모	연구기간	연구비	지원 대상
신진연구 (지역장기연구)	100과제 내외	10년 (5+5년)	1년차 3억원, 2년차부터 연 1.5억원 (총 연구비 16.5억원)	지역대학에 재직 중인 신진연구자 (전임교원)

2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 지원

2.1. 세계최상위 리더급 연구자·연구그룹 육성

○ **(리더 연구자 육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세계 선도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 **리더연구 과제 지속 지원***

* '27년 지원규모 : Top-Tier 3개(9년, 연 16억원), 유형A 10개(9년, 연 8억원)

2.2. AI 활용 과학난제 해결 지원

○ **(AI활용 연구 지원)** AI를 활용해 **새로운 연구 영역·방법론**을 개척할 수 있도록 **과학적 난제를 AI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도전적 연구를 지원

- **핵심연구(전략형)** 사업 내 AI 활용 기초연구, AI가 제시한 가설·데이터·증명 등 검증, AI 발견 결과를 과학적 원리와 이론으로 발전 등을 위한 **과제 신설**

< 과제 주제 예시 >

· (**AI를 통한 난제해결**) AI를 통한 과학기술계 난제 해결
· (**AI 증명 결과의 검증**) AI 증명의 오류, 논리적 비약 등을 추적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
· (**AI 증명의 방법론 연구**) AI가 난제해결에 활용한 논리 등을 연구하여 새로운 연구방법론 도출
· (**문제 설정**) AI 증명 이후에 해결해야 할 이론적 질문, 가설 등을 설계
· (**공리·이론 정립**) AI 증명 결과를 기존의 학문 체계에 통합하고 새로운 공리·이론으로 정립

3 연구지원 시스템 혁신

3.1. 질적 성과 중심의 성과관리 고도화

○ **(질적 성과 중심 관리 강화)** 단계·최종보고서 등에서 **논문·특허 등 양적 실적 제출을 전면 금지***하여 질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 강화

* 연구자가 연구계획서 등 작성 시 연구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단계·최종평가 보고서 등 각종 양식에서 정량성과 평가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 정비

※ **(평가주안점)** 연구 내용의 **도전성, 성실성, 기여도, 활용성** 등을 포함하여 연구기간 동안 창출한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연구내용과 성과 간 적합성 판단 포함) 중심으로 평가

3.2. 연구과제 지원의 전 과정 글로벌화

○ **(참여기회 확대) 우리 연구 생태계**에 편입된 **해외학위 취득자, 우수 외국인연구자** 등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 **연구 참여 기회를 확대**

※ 우수 글로벌 연구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문 과제공고문, 글로벌 표준양식을 제공하는 등 과제관리 전반을 글로벌 친화적으로 개선

○ **(영문양식 도입 확대)** 외국인 지원자 수가 많거나, **선정 평가시 해외 평가위원의 참여 필요성**이 높은 **연구과제 중심**으로 **영문 연구계획서** 필수화 트랙을 **확대***

* (현재) 개인연구 **리더연구 트랙** → (개선) 개인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유치) **트랙**으로 확대

3.3. AI 시대 연구관리 혁신 및 책임성 강화

○ **(지원체계 개선 연구)** **연구지원 방식 자체를 과학적으로 분석·검증**하여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 (예시) 선정·평가 방식, 지원구조(규모, 기간, 트랙), 연구자 경력 경로, AI시대 변화에 대응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데이터 기반 분석·검증하고 개선사항 도출 등

○ **(연구 책임성)** 최근 연구현장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연구자가 **책임성·투명성 기반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연구계획서 등의 **AI 활용 경향을 시범적으로 파악***

* 연구계획서 상 AI 활용 현황(범위, 방식 등)을 샘플링하여 파악하고 향후 제도적 보완 방안 검토

3.4. 평가·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

○ **(발표평가 확대)** **리더 최종평가**를 **발표평가로 운영**하여 **검증 강화** 및 과제종료시까지의 **연구동력 유인**

* **(리더 최종평가)** 토론 → 발표

○ **(평가등급 폐지)** 연구자가 실패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최종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성실한 수행에 따른 **연구 완료 여부만 평가**

○ **(출연연 신청 제한)** PBS 폐지에 따라 **출연연 소속 연구자 신청제한**을 전 과제(전략형 제외)에 **전면 시행하여 대학 교원 수혜 확대**

※ 기 연구수행자가 출연연으로 이직시, 수행포기 정당 사유로 제재대상에서 제외

○ **(홍보 강화)** **과제 협약 시점부터** 우수성과 **대국민 홍보 관리**를 하고, 주요 저널 게재 성과는 **과기부 브리핑, 언론사 인터뷰 등과 연계**하여 **홍보효과 제고**

II 신규과제 신청

1 신규과제 지원 안내

○ 신규과제는 2027년에 선정되는 '최초신규'와 2027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후속신규'로 구분

- 금번 신규과제 공모대상은 최초신규에 한하며, **후속은 별도 안내**

※ 후속신규 대상 사업: 리더연구

※ 리더연구의 경우, 동일 차수 내 최초신규과 후속신규 중 1개 과제만 신청·선정 가능

○ 핵심연구(도약형)사업은 최초신규로 분류

2 신규과제 지원 규모

사 업		과제 수	과제당 지원규모 (직접비 기준, 간접비 별도)
리더연구	유형B(Top-tier)	3개 내외	연 12.8억원 이내 X 9년(5+4)
	유형A	10개 내외(후속 2개 이내 포함)	연 6.4억원 이내 X 9년(5+4)
핵심연구	유형C	100개 내외	연 2.4억원 이내 X 최대 5년
	유형B	670개 내외	연 1.6억원 이내 X 최대 5년
	유형A	825개 내외	연 0.8억원 이내 X 최대 5년
	도약형	50개 내외	연 2억원 이내 X 3년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40개 내외	연 1.6억원 이내 X 10년(5+5)
	전략형(2차 공모)	50개 내외	연 1.6억원 이내 X 최대 3년
	기본연구B(2차 공모)	1,200개 내외	연 0.56억원 이내 X 최대 5년
	기본연구A(2차 공모)	750개 내외	연 0.4억원 이내 X 최대 5년
신진연구	유형B	460개 내외	연 1.2억원 이내 X 최대 5년
	유형A	600개 내외	연 0.8억원 이내 X 최대 3년
	지역장기연구	100개 내외	(1년차) 연 2.4억원 이내 X 1년 (2~10년차) 연 1.2억원 이내 X 9년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트랙	170개 내외	연 1억원 이내 X 5년
	복귀·유치트랙	200개 내외	연 1억원 이내 X 5년

※ 연구비 및 신규과제 수는 국회 예산심사 결과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핵심연구(유형A)에 기초연구정책 등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정책형 과제(2과제 이내) 선정 추진

※ 리더연구(최초신규): 1년차는 9개월분 연구비만 지급

3 신청 및 수행 제한

※ 연구책임자 신청제한 사항 위반 시 사전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전일(핵심(유형C,B,A,도약형): 2026. 12. 6.(일) / 그 외 사업: 2026. 12. 7.(월)까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연구 수행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공통사항)**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

- 연구개시일 기준 과기정통부 우수연구(리더연구, 핵심연구, 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기본연구(기본연구, 생애첫연구), 교육부 학술연구인재육성(석·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박사후국내·외연수, 기본연구(포용형), 보호연구, 미래도전연구지원), 지역중심혁신지원(글로컬R&D지원), 통합기초지원(Post-Doc. 성장형 연구지원,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개인기초연구지원(기본연구(교육부)))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

※ 적용 제외: 글로벌 매칭형, 핵심연구(도전형),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 리더연구 책임자는 집단연구를 포함하여 기초연구사업 중복수행 불가(단, 신진연구자인프라지원, 핵심연구(도전형), 글로벌매칭형 제외)

예외 사항

- 개인기초연구 수행 중인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7.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 ※ 단, 리더연구는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연차/단계 종료 제외)되는 경우
  - ※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예외기준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한우물파기 기초연구는 수행 중인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7.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 ※ 단,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선정 시, 기 수행 중인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는 2027.12.31.자로 종료해야 하며, 중복 수행 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기초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도 미포함(개인연구 중복 신청 및 선정 가능. 단, 지역장기연구 수혜자는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글로벌 매칭형, 핵심연구(도전형)은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연구개발과제 수(3책 5공)에는 포함)

- 기존 최소참여율 적용은 2022년부터 폐지(계속과제 포함)

○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7. 6. 1.) 기준으로 과기정통부 소관 집단연구사업(NRL2.0, 미래연구센터,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및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사업(NRL2.0, 대학기초연구소(G-LAMP),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 연구책임자는 신청 제한

※ 단,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 기존에 리더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선정될 경우 기존의 리더연구 과제는 종료하고 신규 과제 수행

구분	사업명
개인연구	과기정통부 소관 우수연구(리더연구(유형B(Top-tier), 유형A),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전략형, 기본연구B, 기본연구A), 신진연구(유형B, 유형A, 지역장기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복귀·유치) 교육부 소관 지역중심혁신지원, 학술연구인재육성
집단연구	과기정통부·교육부 소관 NRL2.0 과기정통부 소관 미래연구센터,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교육부 소관 대학기초연구소(G-LAMP),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

※ 적용 제외: 글로벌 매칭형, 핵심연구(도전형),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 리더연구 책임자는 집단연구를 포함하여 기초연구사업 중복수행 불가(단, 신진연구자인프라지원, 핵심연구(도전형), 글로벌매칭형 제외)

*** 연구책임자로 동시 선정될 경우, 상위사업 우선 선정**

- 집단연구 > 리더연구, 리더연구 > 핵심연구 ※ 집단연구와 핵심연구는 동시 선정 및 수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 단,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 중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기초연구사업은 중복수행 불가하나,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2024. 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예외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호에 따라)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제7호*에 따라)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 소규모 신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7년~과제 종료 시)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의 연구개발과제 수 미포함 적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능 과제 수 제한 시에만 해당되며,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제한 관련 과제 수에는 포함**

※ 상기 **개인기초연구 중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의 연구개발과제 수 미포함 적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능 과제 수 제한 시에만 해당되며,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제한 관련 과제 수에는 포함**

※ 개인기초연구 외 연평균 연구개발비가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인 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되는지 여부는 소관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 요망

4 신청 절차 및 방법

▸ **2027년도 기초연구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책임)자가 IRIS(NRI) 가입, 연구자 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1 연구자	**2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1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연구자 포함),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2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1877-2041, 042-862-1500) 또는**
IRIS 홈페이지>참여소통>R&D 신문고 게시판 활용

5 신청기간 및 제출자료

[신청 관련 주의사항]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2026. 12. 7.(월) / 그 외 사업*: 2026. 12. 8.(화)) 18:00:00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일(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2026. 12. 9.(수) / 그 외 사업*: 2026. 12. 10.(목)) 18:00:00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됩니다.**

* 리더연구(유형B(Top-tier), 유형A), 핵심연구(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진연구(유형B, 유형A, 지역장기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복귀·유치)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제출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 내에 접수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 절차 없음

- **세부 사업별로 제시된 연구계획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제한자 외에는 신청자격을 미충족 하더라도 과제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선정취소되므로** 신청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관련 주의사항]

- **반드시 제공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각 제출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 관련 사항(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반영 기준 포함)] ※ 개인기초연구 전 사업 공통

- **최근 5년 이내(2022. 1. 1. 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단, 성별에 관계 없이 연구자 본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2022. 1. 1. 이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을 2022. 1. 1. 전으로 반영하여* 실적 작성 가능

※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서식 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증빙서류 첨부 필수이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실적 제출 시 해당 실적은 제외하고 평가 실시

* 예시: 2022. 1. 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2022. 1. 1. 이후가 아닌 2021. 1. 1. 이후 실적부터 제출 가능

※ 세부 사항은 FAQ 및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서식 내 설명내용 참조

□ 리더연구

<예비 연구계획서(1차)>

ㅇ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8.(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10.(목) 18:00:00**

ㅇ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동의서)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 1개의 파일로 제출	연구계획서 (연구내용)	▸ **(작성분량)** 10쪽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최근 5년간(2022. 1. 1. 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10개 이내로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작성

<본 연구계획서(2차)>

- **(대상)** 예비평가(1차) 결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보)
- **(제출기간)** 2월 말 예정(최종 확정일자는 추후 공지)
- **(신청서 서식 및 제출요령)** 본 연구계획서 및 제출요령은 추후 공지

□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ㅇ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7.(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9.(수) 18:00:00**

ㅇ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동의서)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 1개의 파일로 제출	연구계획서 (연구내용)	▸ **(작성분량)**유형C, 유형B 10쪽 이내, 유형A 5쪽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최근 5년간(2022. 1. 1. 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5개 이내로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작성
[3] (핵심유형B,A 우수성과자만 해당) ※ IRIS 신청 시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최근 2년(2025. 3. 1. 이후)에 수상한 **기초연구진흥 유공 표창장, 우수성과100선** **(순수기초분야만 해당) 선정 증빙** ※ 위 자료만 인정하며 기타자료 첨부 금지 및 인정 불가

□ 핵심연구(도약형)

ㅇ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7.(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9.(수) 18:00:00**

ㅇ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동의서)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성과 요약보고서 및 신규과제 연구계획서(연구내용) **※ 1개의 파일로 제출**	▸ **(작성분량) 7**쪽 이내 (요약보고서 5쪽 이내,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2쪽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연구성과 요약보고서 실적은 기존 수행 과제의 개시일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5개(필수), 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작성

□ 핵심연구(한우물파기 기초연구)

ㅇ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8.(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10.(목) 18:00:00**

ㅇ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동의서, (해당시) 경력, 역량 증빙자료)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 1개의 파일로 제출	연구계획서 (연구내용)	▸ **(작성분량)** 10쪽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최근 5년간(2022. 1. 1. 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5개 이내로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작성
[3] (해당시) 경력, 역량 증빙자료		▸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해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내 (2012. 1. 1. 이후 취득)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수 제출

※ [1] ~ [3] 서식은 IRIS로 과제 신청 시 시스템 업로드

□ 신진연구(유형B, 유형A, 지역장기연구)

ㅇ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8.(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10.(목) 18:00:00**

ㅇ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동의서, 연구자 과제참여 확약서, (해당시) 경력, 역량 증빙자료)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 1개의 파일로 제출**	연구계획서 (연구내용)	▸ **(작성분량)** 10쪽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최근 5년간(2022. 1. 1.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5개 이내로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작성
[3] 연구자 과제참여 확약서 **※ 1개의 파일로 제출**	**(필수)** 연구자 과제참여 확약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작성 ※ 연구책임자 직인(서명대체 가능) 및 주관연구기관 직인 필수 ※ IRIS 계획서 접수 화면에서 필수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평가위원에게 제공 가능
	(해당시) 최초 조교수 이상 직위 임용 5년 이내 확약서	▸ 신진연구 신청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20. 1. 1. 이후 취득) 또는 만 39세 이하(1987. 1. 1. 이후 출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2022. 1. 1. 이후)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4] (해당시) 경력, 역량 증빙자료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고,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해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20. 1. 1. 이후 취득)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수 제출

※ [1] ~ [4] 서식은 IRIS로 과제 신청 시 시스템 업로드

□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ㅇ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8.(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10.(목) 18:00:00**

ㅇ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동의서, 연구자 과제참여 확약서, (해당시) 경력, 역량 증빙자료 등)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 1개의 파일로 제출	연구계획서 (연구내용)	▸ **(작성분량)** 10쪽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최근 5년간(2022. 1. 1. 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5개 이내로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작성
[3] 연구자 과제참여 확약서 ※ 1개의 파일로 제출	**(필수)** 연구자 과제참여 확약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작성
	(해당시) 박사학위 취득 예정 증명서	▸ 박사학위 **취득 예정**(~2027. 2. 28.)**인 경우에만** 제출
[4] (해당시) 경력, 역량 증빙자료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고,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해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20. 1. 1. 이후 취득)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수 제출
[5] (해당시) 전문연구요원 과제부여 확인서		▸ **박사 전문연구요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만 공문 제출**

※ [1] ~ [4] 서식은 IRIS로 과제 신청 시 시스템 업로드, [5]는 해당자에 한하여 공문으로 제출

□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유치트랙)

ㅇ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8.(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6. 11. 25.(수) 14:00:00 ~ **2026. 12. 10.(목) 18:00:00**

ㅇ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동의서, 연구자 과제참여 확약서, (해당시) 경력, 역량 증빙자료 등)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 1개의 파일로 제출** **※ 영문으로 제출**	연구계획서(연구내용)	▸ **(작성분량)** 10쪽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최근 5년간(2022. 1. 1. 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5개 이내로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작성
[3] 연구자 과제참여 확약서 **※ 1개의 파일로 제출**	**(필수)** 연구자 과제참여 확약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작성
	(해당시) 박사학위 취득 예정 증명서	▸ 박사학위 **취득 예정**(~2027. 8. 31.)**인 경우에만** 제출
[4] (해당시) 경력, 역량 증빙자료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고,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해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20. 1. 1. 이후 취득)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수 제출
[5] (해당시) 전문연구요원 과제부여 확인서		▸ **박사 전문연구요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만 공문 제출**

※ [1] ~ [4] 서식은 IRIS로 과제 신청 시 시스템 업로드, [5]는 해당자에 한하여 공문으로 제출

※ 온라인 입력 매뉴얼은 접수 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사업안내-사업공고-사업일반공지의 각 사업별 게시판에 별도 공지 예정

6 우대·감점제도 운영

□ 우대

○ 여성연구자, 성과우수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대하되, 과제평가 점수가 '추천' 이상(온라인 서면평가는 80점 이상)에 한하여 지원

우대 항목	목적	적용 대상 사업	우대 적용 기준
여성연구자	여성연구자에 대한 연구기회 확대 및 안정적 연구환경 마련	핵심연구(유형B)	여성연구자 선정목표제*를 통한 추가 선정
성과우수자	연구 성과 우수자에 대한 안정적 연구지원	핵심연구(유형B, A)	연구 성과 우수자로 선정된 연구자** 과제 추가 선정(신청방법 P.14 참고)
신진연구자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성장 경로 보장	신진연구(유형B)	세종(국내) 수행 중 전임교원으로 신분 변동된 연구책임자가 정상종료(5년) 되는 해에 과제를 신청한 경우 우대 선정***

* 신규과제 예산 기준으로 20% 이상을 여성연구자에 배분

** (연구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 성과 100선 중 순수기초 분야 선정자 등 기초연구진흥 유공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적용

*** (**2022년 선정** 세종(국내) 연구책임자 중 전임교원으로 변동된 연구자 대상) 별도 증빙 제출 불필요하며 사전검토 시 세종(국내) 수행 중 이력 확인 예정

□ 감점

○ 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점수 감점 부여

-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등 불리하게 대우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2조제5항 각 호

7 공통 유의사항

□ 접수 관련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주관연구기관 반려 불필요) [회수] 버튼 클릭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함.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를 완료([제출]버튼 클릭)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수행 연구자 신분변동에 따른 조치 완화**

- 신진연구(유형B, 유형A, 지역장기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복귀·유치트랙)을 신청한 연구자가 접수마감일 이후 신분변동이 있어도 과제수행 허용

※ 신진연구(지역장기연구)는 국내 지역대학(비전임)으로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과제수행 허용

□ 연구자 연구윤리 의식 확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는 물론 각종 보고서 및 성과를 허위(중복성 포함)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조치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주요 연구수행 실적 작성 시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과제를 누락하거나, 2개 이상 동시 신청한 과제가 동시 선정되었음에도 과제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등 포함

□ 기타 유의사항

○ 과제관리가 불가능한 기관 소속 연구자 신청 및 수행 불가

- 연구지원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연구지원조직을 갖추지 않은 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미인증 기관 등 과제관리가 불가능한 기관 소속의 연구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불가

○ 연구책임자 변경 불가

○ 위탁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계상·집행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접수 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 계상을 원하는 연구자에 한하여 IRIS 협약변경 신청을 통한 승인*을 득한 후 계상·집행 가능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안식년(연구년) 등 파견 비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집행 불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을 위한 IRIS 승인성 협약변경 신청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및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제출 필요

8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유의사항

□ 국외파견 기간 제한

○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은 사업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총 연구기간(5년) 중 최대 1년까지만 국외파견 허용(계속과제 공통 적용)

※ ('21년) 단계별 6개월 이내, 최대 1년 → ('22년~) 총연구기간 내 단계 구분 없이 최대 1년

□ 주관연구기관이 없는 연구자도 신청 가능

○ **(원칙)** 현재 소속한 또는 소속 예정인 국내대학 또는 국(공)립*·민간연구소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과제 신청

* PBS 폐지 출연연 신청 불가

○ **(예외)** 현재 소속한 또는 소속 예정인 기관을 통해 과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주관연구기관을 한국연구재단으로 선택하여 과제 신청 가능

- 한국연구재단으로 신청한 과제가 선정될 경우, 실제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연구개시일(2027.3.1.) 기준 6개월 이내에 확정(채용) 필요

※ 2027.8.31.까지 주관연구기관 미확정 시 선정 취소

※ 주관연구기관 확정 이후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확인 및 추가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확정

※ 주관연구기관 확정은 6개월 이내까지 유예 가능하나 연구개시일은 2027.3.1.이므로,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연구책임자 요건 충족 필요

※ 주관연구기관 확정 사유 등을 포함한 공문 송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확인·평가 후 최종선정 예정

- 연구개시일 이후 채용 유예기간의 인건비는 정산 시 반납
- 과제 신청 전 IRIS 회원정보 내 기관 정보에서 소속기관 정보를 한국연구재단으로 설정한 후 신청

※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만 주관연구기관 없이 신청가능

[참고] IRIS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소속기관을 변경하는 방법

1. IRIS 로그인 후, 중앙 상단의 '성명(국가연구자번호)' 부분을 클릭 > 회원정보 내 기관정보 부분에서 소속기관 검색창에서 '(재)한국연구재단' 검색 후 선택
2. 소속부서는 '세종과학펠로우십', 사번은 '00000'를 입력(숫자 0을 5번 입력)

□ 직접비 관련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인건비	- 상한액: 65백만원 (12개월 기준) (※ 자녀수당 신청 시 65백만원 초과 가능) ※ 인건비의 경우, 고용계약상의 인건비 총액 초과 불가 (초과 계상시, 초과된 금액 감액조정 또는 정산 시 반납) - 자녀수당 추가 계상 가능 ※ 과제신청 시 연구책임자 인건비에 추가로 자녀수당을 계상하여 최대 65백만원+α로 신청
기타	- 직접비 총액(연구책임자 인건비(자녀수당 포함)+ 그 외 연구비)은 **1억원 초과 불가** ※ 연구책임자 인건비는 자녀수당을 포함한 인건비이며 자녀수당을 포함하여 6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외 연구비를 조정하여 직접비 총액을 1억원 이내로 계상 ※ 참여연구자 및 학생인건비는 그 외 연구비에 포함 ※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 중 인건비 계상 불가(그 외 연구비 연 35백만원까지 계상가능) - 연구수당 계상 불가 ※ 단, **과제 신청 후 연구개시 전까지 전임 또는 정규직 연구원으로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협약 시 연구수당 계상 가능 - 2023년부터 회의비 계상 가능(계속과제 공통 적용)

[예시] 세종과학펠로우십 신청 가능한 연간 직접비 한도(12개월 기준)

구분	연구책임자 인건비		그 외 연구비(C)	직접비 합계(A+B+C)
	연구책임자 인건비(A)	자녀수당(B)		
금액	최대 65,000천원	**기관 규정에 따름**	제한없음	**최대 100,000천원**

[예시] 세종과학펠로우십 연구비 신청오류 예시

1. 소속 주관연구기관과의 고용계약상 총급여를 초과한 연구책임자 인건비 계상(12개월 기준)

주관연구기관 고용계약상 총급여	연구책임자 인건비 계상	신청가능여부	사유
40,000천원	65,000천원	불가	고용계약상의 총급여 초과 불가

→ **연구개시일 기준 고용계약상 총급여가 40,000천원인 경우, 연구책임자 인건비는 최대 40,000천원까지 신청 가능**

2. 연구책임자 인건비 또는 그 외 연구비 최대 금액 미충족(12개월 기준)

직접비	자녀수당 신청여부	연구책임자 인건비	그 외 연구비	신청가능여부	사유
90,000천원	미신청	70,000천원	20,000천원	불가	연구책임자 인건비 최대 65백만원 기준 초과
90,000천원	미신청	40,000천원	**50,000천원**	신청가능	기준 충족
90,000천원	미신청	55,000천원	35,000천원	신청가능	기준 충족
100,000천원	**신청(자녀 2명)**	56,400천원+3,600천원	**40,000천원**	신청가능	기준 충족
103,600천원	**신청(자녀 2명)**	65,000천원+3,600천원	35,000천원	불가	직접비 총액 1억원 기준 초과
98,600천원	**신청(자녀 2명)**	65,000천원+3,600천원	30,000천원	신청가능	기준 충족

※ 연구비를 초과 계상한 경우, 선정 시 초과한 금액에 대한 연구비 감액 조정

※ 자녀수당 지급 가능여부 및 지급액은 주관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적용

□ 자녀수당 관련 주요 내용

○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름

※ 연구개시일(2027. 3. 1.)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신청방법)** 과제신청 시, 연구책임자 인건비(최대 65백만원)와 자녀수당을 합산하여 '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로 계상

※ 과제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협약 시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 주관연구기관 담당자가 확인)

○ **(주의사항)** 자녀수당은 연구책임자 인건비에 추가 계상하는 금액으로, 고용계약상 인건비 총액에 반영되어야 하며, 인건비계상률 및 간접비 계산 시에도 포함

- 부부가 모두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과제에 선정된 경우, 자녀수당 중복 계상 불가(부부 중 한 명만 계상 가능)
- 전임교원, 정규직 연구원 등으로 신분이 변동될 경우 자녀수당 지원 불가

※ 자녀수당 지원은 사업 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박사 전문연구요원 참여 시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박사 전문연구요원 복무자가 참여하고자 할 경우,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이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

***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을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는 3책 5공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전문연구요원 복무 관련 규정 준수 및 연구개시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필수(박사학위 과정 및 수료자 신청 불가)

※ 과제 접수 및 협약 시 연구과제 부여 확인서 필수 제출

○ 2026. 12. 4.(금)까지 접수(예정)인 전문연구요원 박사 및 연구소장(지도교수)은 **'전문연구요원 과제 부여 확인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재단에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 연구소장(또는 지도교수)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 공문 제출 가능

○ 연구계획서 및 대표적 연구실적은 연구과제를 부여받는 박사 전문연구요원 기준으로 작성

※ 연구책임자(소속 연구소장) 기준으로 작성 시, 해당 실적은 평가대상에 미포함

○ 복무만료 후 연구책임자를 연구소장에서 해당 박사 전문연구요원으로 변경*하여 계속 수행 가능

- 단, 연구 수행이 가능한 주관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제3자로 변경 불가

* 변경시, 연구수행이 가능한 주관연구기관의 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 제출 必

○ 연구비 신청 안내

- 복무기간 동안은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며, 그 외 연구비 최대 35백만원까지만 신청가능

- 복무종료일이 포함된 연차는 그 외 연구비 최대 35백만원 외 복무종료일 후부터 인건비를 일할로 계상하여 신청 가능

[예시] 복무기간이 ~2028.8.31.인 경우

2027년도 선정	연차별 연구기간	최대 신청 가능 직접비		연차별 복무기간 포함 여부
		연구책임자 인건비	그 외 연구비	
1년차	2027.3.1.~2028.2.29.	-	35,000천원	**포함**
2년차	2028.3.1.~2029.2.28.	**32,232천원***	35,000천원	**포함**
3년차	2029.3.1.~2030.2.28.	65,000천원	35,000천원	미포함
4년차	2030.3.1.~2031.2.28.	65,000천원	35,000천원	미포함
5년차	2031.3.1.~2032.2.29.	65,000천원	35,000천원	미포함

* 12개월 기준 신청 가능한 연구책임자 인건비는 최대 65백만원이므로, 복무종료일부터 해당 연차의 남은 기간이 181일인 경우 연구책임자 인건비는 **65백만원/365일*181일이므로 최대 32,232천원(천원 미만 절사)까지 신청 가능**

○ 소속 병역지정업체가 기업인 경우, 기업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부담기준 및 영리기관 연구비 집행 기준 등 준수

□ 연구책임자 신분변동 관련

○ (비전임에서 전임으로 신분 변동 시)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전임으로 신분이 변동되어도 과제의 계속수행 가능

9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유치트랙)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 신분변동 관련

○ (비전임에서 전임으로 신분 변동 시)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전임으로 신분이 변동되어도 과제의 계속수행 가능

○ 이직으로 인한 과제 중단은 이직 기관이 국내 기관이면서 연구개시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

□ 국외파견 기간 제한

○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유치트랙)은 사업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총 연구기간(5년) 중 최대 1년까지만 국외파견 허용(계속과제 공통 적용)

※ 단, 1년 이상의 파견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시 명시하고, 1년의 국외파견 이후 국내 연구에서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주관연구기관이 없는 연구자도 신청 가능

○ **(원칙)** 현재 소속한 또는 소속 예정인 국내 대학 또는 국(공)립*·민간연구소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과제 신청

* PBS 폐지 출연연 신청 불가

○ **(예외)** 현재 소속한 또는 소속 예정인 기관을 통해 과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주관연구기관을 한국연구재단으로 선택하여 과제 신청 가능

- 한국연구재단으로 신청한 과제가 선정될 경우, 실제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연구개시일(2027.9.1.) 이내에 확정(채용) 필요

※ 개시일 유예 불가, 2027.8.31.까지 주관연구기관 미확정 시 선정 취소

※ 주관연구기관 확정 이후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확인 및 추가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확정

※ 주관연구기관 확정 사유 등을 포함한 공문 송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확인·평가 후 최종선정 예정

- 과제 신청 전 IRIS 회원정보 내 기관정보에서 소속기관 정보를 한국연구재단으로 설정한 후 신청

※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유치트랙)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만 주관연구기관 없이 신청가능

[참고] IRIS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소속기관을 변경하는 방법

1. IRIS 로그인 후, 중앙 상단의 '성명(국가연구자번호)' 부분을 클릭 > 회원정보 내 기관정보 부분에서 소속기관 검색창에서 '(재)한국연구재단' 검색 후 선택
2. 소속부서는 '세종과학펠로우십', 사번은 '00000'를 입력(숫자 0을 5번 입력)

□ 박사 전문연구요원 참여 시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박사 전문연구요원 복무자가 참여하고자 할 경우,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이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

***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을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는 3책 5공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전문연구요원 복무 관련 규정 준수 및 연구개시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필수(박사학위 과정 및 수료자 신청 불가)

※ 과제 접수 및 협약 시 연구과제 부여 확인서 필수 제출

○ 2026. 12. 4.(금)까지 접수(예정)인 전문연구요원 박사 및 연구소장(지도교수)은 **'전문연구요원 과제 부여 확인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재단에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 연구소장(또는 지도교수)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 공문 제출 가능

○ 연구계획서 및 대표적 연구실적은 연구과제를 부여받는 박사 전문연구요원 기준으로 작성

※ 연구책임자(소속 연구소장) 기준으로 작성 시, 해당 실적은 평가대상에 미포함

○ 복무만료 후 연구책임자를 연구소장에서 해당 박사 전문연구요원으로 변경*하여 계속 수행 가능

- 단, 연구수행이 가능한 주관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제3자로 변경 불가

* 변경시, 연구수행이 가능한 주관연구기관의 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 제출 必

○ 연구비 신청 안내

- 복무기간 동안 직접비는 최대 35백만원까지만 신청가능
- 복무종료일이 포함된 연차는 그 외 연구비 최대 35백만원 외 복무종료일 후부터 인건비를 일할로 계상하여 신청 가능

[예시] 복무기간이 ~2029.2.28.인 경우

2027년도 선정	연차별 연구기간	최대 신청 가능 직접비	연차별 복무기간 포함 여부
1년차	2027.9.1.~2028.8.31.	35,000천원	**포함**
2년차	2028.9.1.~2029.8.31.	32,767천원* + 35,000천원	**포함**
3년차	2029.9.1.~2030.8.31.	100,000천원	미포함
4년차	2030.9.1.~2031.8.31.	100,000천원	미포함
5년차	2031.9.1.~2032.8.31.	100,000천원	미포함

* 12개월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연구비는 복무종료일부터 해당 연차의 남은 기간이 **184일**인 경우, **65백만원/365일*184일이므로 최대 32,767천원까지 추가 신청 가능**

○ 소속 병역지정업체가 기업인 경우, 기업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부담기준 및 영리기관 연구비 집행 기준 등 준수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절차 및 방법

□ 리더연구

○ 평가절차: 예비평가(토론), 본 평가(발표)를 거쳐 선정

<table>
<tr><th>사전검토</th><th colspan="2">1차 평가(예비평가)</th><th colspan="2">2차 평가(본 평가)</th><th>선정 및 통보</th></tr>
<tr><td>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신청 자격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td><td colspan="2" rowspan="2">예비계획서 평가
(토론평가)</td><td>① 온라인 서면검토</td><td rowspan="2">③
심층평가
(발표평가)</td><td rowspan="2">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확정)</td></tr>
<tr><td>② 해외평가(서면검토)
※ 해외 평가위원이 평가</td></tr>
<tr><td>연구재단</td><td colspan="4">연구재단(평가위원회)</td><td>과기정통부</td></tr>
</table>

온라인 서면검토를 통한 보완 질의, 해외평가 결과를
심층평가 전 연구책임자에게 안내하고 답변 기회 부여

○ 선정평가 방법

- 1차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예상 수의 2배수 내외를 2차 본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단,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선정과제 수 조정 가능)
- 본 평가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주안점을 바탕으로 위원회 토론을 거쳐 선정

※ 평가 절차 및 방법은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신진연구·세종과학펠로우십

○ 평가절차

<table>
<tr><th>사전검토</th><th>1차 평가</th><th>선정 및 통보</th></tr>
<tr><td>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신청 자격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td><td>온라인 서면평가*
또는 토론평가**</td><td>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확정)</td></tr>
<tr><td>연구재단</td><td>연구재단(평가위원회)</td><td>과기정통부</td></tr>
</table>

* 핵심연구(유형B, 유형A), 신진연구(유형B, 유형A) 및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복귀·유치트랙))

** 핵심연구(유형C,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진연구(지역장기연구)

※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핵심연구(도약형)

ㅇ 평가절차

사전검토	1차 평가	2차 평가	선정 및 통보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신청 자격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토론평가 (전문평가단)	PM 과제 추천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확정)
연구재단	연구재단(평가위원회)	연구재단(평가위원회)	과기정통부

※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선정평가 방법

구 분		1차 평가	2차 평가
핵심연구	유형C	토론	-
	유형B	온라인 서면	-
	유형A	온라인 서면	-
	도약형	토론(전문평가단)	PM추천 방식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토론	-
신진연구	유형B	온라인 서면	-
	유형A	온라인 서면	-
	지역장기연구	토론	-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트랙	온라인 서면	-
	복귀·유치트랙		

※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2 평가항목 및 내용

□ 리더연구(유형B(Top-tier), 유형A) 평가항목 및 배점

리더연구(유형B(Top-tier), 유형A)			심층평가
[1차] 예비평가(토론)		[2차] 본평가(발표)	
연구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 융합분야의 경우, 융합성도 포함	50%	연구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 융합분야의 경우, 융합성도 포함	35점
연구자의 우수성	40%	연구책임자 역량의 우수성	45점
연구 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10점
		유치기관 지원의지	10점
합 계	**100%**	**합 계**	**100점**

※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평가항목 및 가중치

평가 항목	핵심연구		
	유형C(토론)	유형B(온라인 서면)	유형A(온라인 서면)
연구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 융합분야의 경우, 융합성도 포함	40%	40%	40%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포함	30%	30%	30%
연구자의 우수성	20%	20%	20%
연구 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	10%	10%
합 계	**100%**	**100점**	**100점**

※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핵심연구(도약형) 평가항목 및 가중치

평가 항목	핵심연구(도약형)
	([1차] 토론(전문평가단) + [2차] PM과제 추천)
연구목표 달성수준 및 연구성과의 질적수준	70%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30%
합 계	**100%**

※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핵심연구(한우물파기 기초연구) 평가항목 및 가중치

평가 항목	핵심연구(한우물파기 기초연구)
	(토론)
연구 과제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40%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충실성)	30%
연구 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30%
합 계	**100%**

※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진연구(유형B, 유형A) 평가항목 및 가중치

평가 항목	신진연구	
	유형B(온라인 서면)	유형A(온라인 서면)
연구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 융합분야의 경우, 융합성도 포함	40%	40%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포함	30%	30%
연구자의 우수성	20%	20%
연구 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	10%
합 계	**100점**	**100점**

※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진연구(지역장기연구) 평가항목 및 가중치

평가 항목	신진연구(지역장기연구)
	(토론)
연구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30%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자의 우수성	10%
장비 구축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30%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
합 계	**100%**

※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복귀·유치트랙) 평가항목 및 배점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트랙(온라인 서면)

평가 항목	배점
연구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 융합분야의 경우, 융합성도 포함	50%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20%
사업 목적과의 적합성	10%
연구자의 우수성	10%
연구 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
합 계	**100점**

복귀·유치트랙(온라인 서면)

평가 항목	배점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독창성 ※ 융합분야의 경우, 융합성도 포함	15%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자의 연구실적 및 역량	25%
국내 장기 연구계획 및 정착 의지	30%
연구성과의 활용/기여 가능성	10%
합 계	**100점**

※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3 차별성 검토

<table>
<tr><th>구 분</th><th>NTIS 차별성 검토</th><th>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th></tr>
<tr><td>검토 내용</td><td>선정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NTIS 및 (필요 시) 전문가를 활용한 차별성 검토 실시</td><td>신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동일차수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최초신규 접수된 연구계획서와 차별성 검토</td></tr>
<tr><td>관련 근거</td><td>「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td><td>「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td></tr>
<tr><td>검토 방법</td><td>NTIS를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 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td><td>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한국연구재단 e-R&D시스템을 통해 유사과제 검토,
검토 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td></tr>
<tr><td>검토 기준</td><td>선정/후보권 과제와 최근 10년(당해연도 포함) 이내 NTIS 차별성 30점 이하 유사과제* 간의 차별성 검토
※ 검토자(RB/전문가 2인) 모두 ‘차별성 없음’이라고 판정한 경우에만 ‘차별성 없음’으로 최종 확정</td><td>차별성 30점 이하 유사과제 간의 차별성 검토
※ 선정/후보권과 관계없이 실시
※ 검토자(RB/전문가 2인) 모두 ‘차별성 없음’이라고 판정한 경우에만 ‘차별성 없음’으로 최종 확정</td></tr>
<tr><td>검토 절차</td><td colspan="2">사전검토 및 평가 대상과제 확정 사업팀
평가 실시 ➔ 선정/후보권 과제 확정 학문단
NTIS 차별성 및 신청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사업팀
(RB/전문가 2인을 통한) 차별성 검토 실시 학문단
(차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PM 협의체</td></tr>
</table>

* ① **(핵심연구(도약형) 신청과제에만 적용 – 본인 핵심(도약형) 직전과제는 차별성 검토 예외)** 핵심연구(도약형)의 경우,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기초연구사업(과기정통부) 연구과제 신청 시 해당 사업 신청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과제는 차별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

② **(리더연구-핵심연구 내 중복 신청한 과제는 차별성 검토 예외)** 리더연구 신청과제와 중복신청한 핵심연구 신청과제는 상위사업 우선 선정되므로 서로의 차별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

③ **(개인기초연구사업 신청과제 전체 적용 – 기 수행과제(신진인프라) 차별성 검토 예외)**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 상 타 수행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차별성 검토 유사과제 대상에서 제외

④ **(개인기초연구사업 신청과제 전체 적용 – 기 수행과제(재도약) 차별성 검토 예외)** 재도약연구의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기초연구사업(과기정통부) 연구과제 신청 시 해당 재도약연구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재도약연구 과제는 차별성 검토 유사과제 대상에서 제외

**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 지역중심혁신지원, 학술연구인재육성(舊학문후속세대지원, 舊학술연구혁신지원) (단, 학술연구인재육성-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 사업은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

※ 차별성 검토 방법 및 세부 기준은 향후 AI 적용 여부, 사업추진 구체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과제는 추천·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Ⅳ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 따라 관리

1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구성 항목: 직접비 + 간접비

※ 접수 시 직접비만 신청하며 간접비는 선정 시 한국연구재단이 별도 산정하여 지급

○ **직접비**

○ **간접비**: 아래 간접비 산식을 적용하며 천원 미만 단위 절사

- **리더연구(유형B(Top-tier), 유형A),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진연구(유형B, 유형A, 지역장기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복귀·유치트랙))**
- 직접비 5,000만 원까지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에 일정비율(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0.5)을 적용하여 간접비 산출, 5,000만 원 초과분은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대로 산출

○ **직접비 5,000만원 이하 과제의 간접비 기준**
= 직접비×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50%

○ **직접비 5,000만원 초과 과제의 간접비 기준**
= (5,000만원×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50%)+(직접비의 5,000만원 초과분×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 지급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와 주관연구기관 간 협약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 지급시기: 지원과제 최종 확정 시 협약체결 후 지급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폐지

○ 기초연구사업의 회계연도 일치를 폐지하여 1차년도 연구기간 조정 없이 연차별 12개월분을 지원

※ 단, 리더연구는 2027년 예산안에 따라 9개월분만 지원

※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 관련 총연구비 산정 방식 변경

○ **총연구비 산정 기준**을 과제 개시일이 아닌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후 간접비 변동분은 **총연구비 고정 후 직접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

※ (배경) 주관연구기관 통폐합 및 고시비율 개정 불확실성으로 사업별 지출액이 수시 변동되어 신규 선정과제 관리의 유연성 저하

□ 주관연구기관 이동 시 연구비 지급 기준(연구개시일 기준(이전 포함) 이직)

○ 주관연구기관 이동으로 간접비 고시비율이 변경되어도, 연차별 총 연구비(직접비+간접비)는 **당초 선정 시 확정된* 총 금액 기준**으로 지급

* 기존 기관(신규과제 신청·접수 당시 주관연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에 따라 총 금액 확정 이후 이직 기관(개시일 기준 소속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에 따라 적용하여 직/간접비 변경

□ 기업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별표1]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

- 당초 선정 시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신규과제 신청·접수 당시 기준에 따라 선정금액 확정(확정된 연구개발비 내 법령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조정)

※ 2024년 이후 선정과제 및 2024년부터 주관연구기관을 기업으로 변경하는 계속과제에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 1] ※ 시행령 개정 시, 개정 법령에 따라 적용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라.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라.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 과제 신청 시에는 직접비만 신청하므로, [별첨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계산기를 참고하여 신청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 연구혁신비 ※ 추후 협약 시 안내 예정

- **(사용용도)**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만 해당)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활용비, 해외 연구자 유치 비용, 야근 식대는 제외)에 해당하는 비용
- **(사용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에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의 **연구재료비와 연구활동비의 합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연구혁신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사전승인 대상

  ※ 연차별 평균 5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계상 불가 항목)**
  - 연구재료비의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로 건별 3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 연구활동비의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로 건별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 인건비에 해당하거나 인건비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협약용 연구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해야 함.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제2항

○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연구비 사용과 관리 시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과 협약용 연구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

○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연구비 사용내역을 보고
- 각 단계(단계구분이 없는 경우 총연구기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 연구비 정산은 각 단계 종료(단계구분이 없는 경우 총 연구기간 종료) 시 실시

○ **연구비 유용, 직위해제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의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연구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 등 금지**

-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 등을 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 시 연구비의 사용용도 위반행위로 보고 협약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실시

<참고>「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Ⅴ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 **단계평가:** 5+4년, 5+5년 평가방식 적용

○ 대상: 리더연구(유형B(Top-tier), 유형A), 핵심연구(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진연구(지역장기연구)

○ 각 단계종료 시점에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최종평가:** 연구종료 후 연구성과에 대한 학문적·기술적 우수성 평가

○ 대상: 리더연구(유형B(Top-tier), 유형A), 핵심연구(유형C,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 최종평가 면제사업도 최종보고서는 제출 필수(최종평가만 면제)
※ 신진연구(지역장기연구) 최종평가 여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결과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 연구종료 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단계/최종평가가 수행 과정 성실도 중심의 완료 여부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성실수행 평가를 위한 별도 양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연구수행 성과입력: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 인력, 논문 발표실적 등을 중심으로 한 성과내용을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특수관계인 연구과제 참여, 국내외 파견 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정합성 검증 관리 강화

○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가능

2 리더연구 연구관리사항

□ 과제 운영 관리 및 지원

○ 리더연구 책임자는 과제 수행 중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기초연구사업은 중복수행 불가)**

-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집단연구사업(NRL2.0, 미래연구센터,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기초연구소(G-LAMP),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 연구책임자는 신청 제한

※ 단,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 연구기획사업, 국제공동연구, 산업체 또는 국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수행자는 참여 가능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보직을 수행할 수 없음.**

- 필요시, 승인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이 사전검토 후 승인

<table>
<tr><th>구분</th><th>기준</th></tr>
<tr><td>승인불가 보직</td><td>기관장(총장, 원장 등), 학장, 처장, BK사업단장, IBS연구단장 등
※ 신규과제 선정 시, 과제 개시 전 해당 보직의 임기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BK사업단장 및 IBS연구단장은 소속기관의 보직은 아니나, 사업목적과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리더연구와 동시수행 불가</td></tr>
<tr><td>승인가능 보직</td><td>승인불가 보직을 제외한 연구 관련 보직 및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보직에 한함</td></tr>
<tr><td>승인조건</td><td>사전 승인 후 보직수행을 허용하며, 연구책임자 제출 서류 및 직전 단계평가 결과 등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보직수행 타당성) 보직수행 사유, 보직 기간 중 연구계획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용
- (단계평가 결과) 아래 기준을 준용하되, 직전 단계평가 시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정성적 검토 후 이를 충족하는 경우 허용
<table><tr><td>검토 기준</td><td>• 계획한 연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고, 연구 수행계획 대비 매우 성실하게 수행하였음.
• 산출된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이 탁월함.
• 연구 결과가 향후 관련 분야의 과학적 지식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거나,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td></tr></table>※ 보직을 기 수행 중인 연구자가 선정된 경우, 연구개시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보직 수행 승인을 받아야 함
※ 1단계 과제는 단계평가 전이므로 전문가(적절성) 검토 등을 거쳐 보직수행을 우선 허용하되, 차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보직수행 허용여부 결정
※ 보직기간이 장기인 경우는 차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수행이 가능하며, 차기 단계 보직수행 승인 재요청 필요</td></tr>
<tr><td>보직 승인 기간</td><td>현재 단계종료일까지 승인</td></tr>
</table>

※ 차기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시, 보직수행 내용을 연구수행의 성실성 측면에서 검토

※ **계속과제 동일 적용**

ㅇ 리더연구 선정 이후 타 사업으로 이동하기 위해 과제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각 단계별 종료 4개월 이전의 과제로 각 단계별 목표와 최종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현재 리더연구 과제와 타 사업에서 수행예정인 과제 간 연계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이동 가능

- 연구단계 수행 중에는 원칙적으로 중단 불가, 위반 시 참여제한 및 지급된 당해연도 연구비 이내 환수 등 제재조치 부과(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 참조)

□ 주관연구기관의 지원 의무사항

ㅇ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공간의 제공

※ 주관연구기관 확약서 상에서 확약한 공간 제공 건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책임자에게 별도의 사용료 부과 금지

ㅇ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ㅇ 연구단의 독립적 운영 보장

3 지원중단 과제 관리 강화

○ 연구 수행 포기 사유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

-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표①**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①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 2027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등을 심의·확정

<<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

구 분		세부 내용
신분 변동	이직*	•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 포함) ※ 연구개시일 이후 6개월 미만의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 신진연구(지역장기연구) 지역 외 기관(4대 과기원 및 포항공대 포함)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퇴직	• 재임용 탈락 및 소속기관의 귀책사유(폐교, 파산 등)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 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질병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입원) 이력 또는 계획이 기관제출용 진단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출산·육아는 관련 휴직기간이 2년 초과일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타 사업 선정**		•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전 4개월 이내 또는 단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 환율 및 장비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연구장비 구축금액이 기존 계획 대비 20% 이상 증가하여 구축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수행포기의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유치)은 이직 기관이 국내 기관인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

* PBS 폐지 기관 이직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26년도 2차 공고 이후 선정 연구자는 과제 중단, 이전 선정 연구자는 과제 수행 가능)

** 리더연구 계속과제 수행자가 리더연구 신규과제에 선정된 경우,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에 선정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만 해당하며, 구축 계획 변경 등이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

※ 핵심연구(도전형)의 경우 연구실패에 따른 과제 중단신청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연구책임자 이직 시 과제 이관을 원칙으로 하며, 이관 불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과제 중단 시, 구축된 장비는 기관 내부에서 재배치함. 내부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타 대학의 연구자에게 ZEUS 나눔터를 통해 이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및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②

- 기준 이외의 사유로 연구 수행 포기를 요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처분 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등을 심의·확정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 수행 외 국가R&D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 불가

- 연구 중에 연구자의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며, 해당 원칙을 위반시(연구를 중단하고 사업을 이동하고자 할 경우) 불성실한 연구로 간주하여 참여제한 등 조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② **근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른 제재대상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동법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제재처분을 최종 결정한 사항

4 성과관리

○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 내용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상에 수시로 입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지식재산권 취득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 요청 가능

○ 각종 보고서 및 성과를 허위(중복성 포함)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조치

Ⅵ 기타 사항

1 성과 사사표기 안내

□ 사사표기 기본 원칙

○ **(연구개발성과 정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

○ **(적용 대상)** 학술지 논문, 특허 출원 및 등록, 홍보 및 보도자료, 학술대회 발표, 보고서, 연구데이터 공개 등 연구개발성과

○ **(필수 표기사항) 중앙행정기관명,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번호**

○ **(중복사사)** 복수의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지원을 받아 창출된 성과의 경우, 관련 과제를 모두 기재하고 과제별 기여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표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별 사사표기

○ 연구개발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논문의 사사(Acknowledgement)에 지원 사항 명시

·국문 표기 방법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IRIS 연구개발과제번호: RS-0000-00000000, 연구개발과제명: ○○○○)

·영문 표기 방법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SIT) in 0000(Grant No. RS-0000-00000000, Project Title: ○○○○)

※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복수과제 지원 성과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RS-0000-00000000, 과제명 A, 기여율 00%; RS-0000-00000001, 과제명 B, 기여율 00%)

○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및 등록 시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NTIS 과제고유번호
[연구개발과제번호] IRIS 연구개발과제번호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사업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대학교 / ○○연구원 / ○○기업
[연구개발기간] 0000.00.00. ~ 0000.00.00.
[기여율] ○○%
※ 복수 과제의 지원을 받은 특허의 경우, 관련 과제를 모두 기재하고 과제별 기여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

○ 연구개발성과의 언론 홍보·보도 시

본 성과는 000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IRIS 연구개발과제번호: RS-0000-00000000, 연구개발과제명: ○○○○)를 통해 창출된 성과로,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R&D) 예산 000원(성과 등록 사업년도 기준 연구개발비)을 투입하여 수행되었습니다.
※ 언론사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지 않도록 협의 필요

○ 그 외 연구개발성과 공개 시

본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사업(IRIS 연구개발과제번호: RS-0000-00000000)의 지원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입니다.

2 특수관계인 참여 관련 안내 사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승인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 시 특수관계자의 학위 및 전공, 연구 실적 및 연구 참여 경력, 연구 참여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승인 이후 **각 항목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요청**

※ 주관연구기관의 실질적 검토 여부를 확인 가능한 증빙 제출 의무화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검증자료 및 결과 등을 기초하여 전문가 검토 실시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계속과제 동일 적용

○ **신청 기준 및 제출서류**

- **(신청 기간)** 총 연구기간 범위에서 실제 참여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일괄 신청
- **(사전승인 원칙)** 사전승인 원칙*이며, 종료된 연차에 대한 사후 신청은 불인정

* 현재 수행 중 또는 차년도 수행 예정 연차만 신청 가능

- **(연구 참여 인정 시점)** 신청 공문의 참여 승인 요청 일자 기준이며, 특수관계인의 참여 시작일 이후에 요청한 경우, 기관 신청 공문 일자 기준 적용
- **(변경 신청)** 승인 후 참여기간・역할・인건비 등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 필요
- **(제출서류)** 자체위원회 추진 결과,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등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사업일반공지 > 개인기초연구사업 연구계획 변경 관련 안내문 및 신청서식 참고

○ **이의신청**: 불승인 사유와 차별성 있는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고, 이를 구체적 증거로 소명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

- 불승인 통보 후 30일 이내 신청 원칙
- 이의신청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 신청은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3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변경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26.9.30.)」에 따라, 장비 심의 기준 상향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심의 절차 >

<table>
<tr><th>협약변경</th><th colspan="2">연구시설장비 심의</th><th>장비등록</th></tr>
<tr><td rowspan="2">①
(승인성)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변경
(3천만원 이상)</td><td>3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td><td>②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NFEC) 심의
(ZEUS RED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 협약변경 승인 후, 주관기관에서 별도 신청</td><td rowspan="2">③ 장비 구매 후 30일 이내
ZEUS 등록
및 관리</td></tr>
<tr><td>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td><td>②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심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 협약변경 승인 후, 재단에서 심의 후 통보</td></tr>
</table>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3조에 따라, 3천만원 이상 장비를 신규도입/변경/구축포기하려는 경우, 구축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필요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변경 신청 절차 >

협약변경	연구시설장비 신규도입/변경/구축포기	장비등록
① (승인성)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변경 (3천만원 이상)	② 기관 규정에 따라 장비 도입/변경/구축포기 ※ 재단 심의대상 아님	③ 장비 구매 후 30일 이내 ZEUS 등록 및 관리

4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검토 단계에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여부 검토

- 단,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복귀·유치트랙)은 사업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총 연구기간(5년) 중 최대 1년까지만 국외파견 허용(계속과제 공통 적용)

※ 단, 복귀·유치트랙의 경우 1년 이상의 파견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시 명시하고, 1년의 국외파견 이후 국내 연구에서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초과하여 신청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파견 중 신청, 파견 후 신청),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가능

5 (해당시) 데이터관리계획(DMP) 제출

○ 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와 함께 DMP를 제출

※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생산·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담고 있는 문서

- DMP 공통양식 또는 바이오, 소재분야 특화 양식 사용

○ 단계·최종 평가의 각 단계에서 DMP 수립과 이행을 점검

○ 생산된 연구데이터는 분야별 전문센터 또는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을 통해 등록·보존·공개

6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개시 후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알파캠퍼스(https://alpha-campus.kr/)에서 제공하는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이공계)」를 필수 이수

※ 인정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며, 만료될 경우 재수강 필요

※ 참여연구자의 경우 권장사항에 해당

※ 알파캠퍼스 학습지원센터: 1588-5834

7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용 IRB에 확인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https://public.irb.or.kr) 활용 (공용위원회 이용 문의: 02-737-8910, 02-454-9520(신규, 면제과제 신청) / 02-737-7721, 02-737-8957(신규 외 과제 신청))

8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등에 대한 안내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 **개인명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록에 의한 위반**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D 관련 법령 위반 행위임.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성과가 있을 경우, 즉시 주관연구기관에 그 소유를 양도 조치

※ 단, 주관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 등 예외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연구과제의 명칭, 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부처명)

9 연구노트 작성 안내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추후 필요 시 연구과제의 질적 성과 및 성실성 평가의 근거로 연구노트 활용

10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포함)는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s://www.labs.go.kr)에서 법령 및 안전정보 내용 확인(연구실 안전법·제도 문의처: 043-240-6469)

1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및 검증

○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증·조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7조 및 제58조

12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

※ 연구(책임)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결과(선정·단계·최종)에 반영될 수 있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https://safe.koar.kr)을 활용하기를 권고

13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체자원 분양상담 콜센터: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시기 바람.

* 인체유래물: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14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15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한국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6 개인기초연구사업 민간연구소 연구과제 신청에 대한 관리 강화

○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만 인정

17 적용 법령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함.

※ 관련 법령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붙임 1. 개인기초연구사업 FAQ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지 PBS 폐지 정부출연연구소 목록
3.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4.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5.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책임)전문위원(CRB/RB)분야

붙임1 개인기초연구사업 FAQ

FAQ 목 차

가. 공통사항 ····· 59-71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 관련] ····· 59

Q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Q 수행 중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7. 12. 31.) 최종종료하는 경우, 1인 1과제 수행 조건의 예외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Q 수행 중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7. 12. 31.) 최종종료하는 경우, 1인 1과제 수행 조건의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3책 5공에서도 제외됩니까?

Q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대 참여가능 과제 수는 몇 개이며, 신규 신청 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Q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Q 미선정 시, 이후 다른 신청 차수에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타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Q 미선정 시, 2차 신규사업의 접수가 가능합니까?

[신청요건 관련] ····· 62

Q PBS 폐지된 기관은 과제 신청이 불가합니까?

Q 연구진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Q 연구과제 구성 시 공동연구원(참여연구자(공동)) 포함이 가능합니까?

Q 비전임 교원(연구원)도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Q 전임교원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Q 인문사회 전임교원(연구원) 또는 비전임교원(연구원)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Q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도 전임교원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Q 핵심연구(한우물파기 기초연구)·신진연구(유형B,유형A,지역장기연구)·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복귀·유치) 신청 시, 출산·육아 휴직기간으로 인해 박사학위 취득 후 "한우물파기 기초연구는 15년 / 신진연구 및 세종과학펠로우십 7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Q 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Q 외국기관 소속 내·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Q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은 신청할 수 있습니까?

Q 연구기간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Q 민간연구소도 연구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Q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일반병원의 연구원인 경우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Q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서류·접수방법 관련 사항] ····· **65**

Q 연구과제의 차별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Q 영어로 신청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됩니까?

Q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Q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 시, 최근 5년 이내 기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반영하여 제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Q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는 학생연구자까지 모두 서명해야 합니까?

Q 각 접수기간(연구자 접수·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Q 첨부파일 제출 전·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Q 의·치·한의대 소속으로 의약학 분야 신청 시 세부전공(교실) 입력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Q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방법이 궁금합니다.

Q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Q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된 동일인을 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Q 주관연구기관을 대학으로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과제 접수 및 협약 등 절차를 진행할 때 NRI 소속기관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인 직원이 과제관리(검토·승인 등)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Q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 어디로 해야 합니까?

Q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비 계상 시 주의사항] ····· **69**

Q 간접비 분리지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Q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Q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까?

Q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까?

Q 연구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 인건비만 해당됩니까? 그리고 연구수당을 계상하는 비율에 제한이 있습니까?

Q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시 사전 내부결재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까?

Q 외부기관 소속 인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가능합니까?

Q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각 비목별 사용 가능 비용 예시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Q 발생한 이자를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Q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나. 리더연구 72-74

Q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Q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Q 연구과제의 일부를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위탁연구를 맡기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Q 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Q 리더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Q 현재 리더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행 중인 과제가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Q 리더연구와 집단연구에 연구책임자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까?

Q 리더연구 본 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해외전문가평가는 무엇입니까?

Q 산업체에서 리더연구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Q 리더연구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보직수행이 불가하나 필요 시 승인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행이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됩니까?

다.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75

Q 리더연구와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中 1개)는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Q 중견연구 후속과제(중견연계 신진후속 포함)에 선정되어 2027년 종료 예정입니다. 핵심연구(도약형) 지원이 가능합니까?

Q 신진연구(유형A)에 선정되어 2027년 종료 예정입니다. 핵심연구(도약형) 지원이 가능합니까?

Q 기존 수행 학문분야가 아닌 분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Q 금년도 핵심연구(도약형)에 지원하여 미선정 된 후 기존 수행 과제의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2028년 종료로 변경될 경우, 차년도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라. 핵심연구(한우물파기 기초연구) 76

Q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청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Q 현재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의 최종 종료시기에 관계 없이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Q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에 선정되어 기존 수행과제를 2027. 12. 31.자 중단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Q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에 선정되어 기존 수행과제를 2027. 12. 31.자로 중단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패널티 없이 과제 중단을 할 수 있습니까?

Q 신청 가능한 분야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마. 신진연구(유형B, 유형A, 지역장기연구) 77

Q 신진연구 신청 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이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Q 신진연구 신청 시,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 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Q 신진연구 자격요건에서 "만 39세 이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조건으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Q 신진연구에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가능 직위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까?

Q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구개시일(2027. 3. 1.) 전에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까?

Q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수행 중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신진연구(유형B) 우대사항에 해당합니까?

Q NRI 내 연구책임자 학력/경력 정보를 필수 입력해야 합니까?

Q 신진연구 수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신진연구 신청이 가능합니까?

Q 지역장기연구는 연구시설·장비 구축이 필수입니까?

Q 지역장기연구 선정되어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시설·장비만 구축 가능합니까?

Q 지역장기연구 수행 중 이직할 경우 계속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Q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 지역장기연구에 신청 가능합니까?

바.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80-84

Q 세종과학펠로우십 자격요건에서 "만 39세 이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조건으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Q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Q 과제 신청 전에 소속(예정)기관과 협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Q 세종과학펠로우십 신청 전에 소속기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까?

Q 과제 수행 중 전임교원 및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될 경우, 과제 계속 수행이 가능합니까?

Q 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인건비/그 외 연구비 간 변경이 가능합니까?

Q 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 계상률 최소 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까?

Q 연구개발비 신청 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 계상이 가능합니까?

Q 자녀수당 신청 시 사전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Q 과제 수행 중 자녀가 출생한 경우, 자녀수당 신청이 가능합니까?
Q 자녀수당은 가족수당으로만 지급되어야 합니까?
Q 과제 수행 중 6개월 이상 국외파견이 가능합니까?
Q 연구계획서는 총 연구기간(5년)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까?
Q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에서 회의비 계상이 가능합니까?
Q 전문연구요원이 과제 신청 시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Q 전문연구요원이 과제 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Q 전문연구요원이 과제 신청을 할 때 연구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사.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유치) 84-86

Q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유치트랙) 신청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Q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Q 외국 소재 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Q 정규직으로 신분이 변동되어도 계속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Q 세종과학펠로우십 신청 전에 소속기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까?
Q 과제 수행 중 6개월 이상 국외파견이 가능합니까?
Q 연구개발비 신청 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 계상이 가능합니까?
Q 연구개발비 신청 시, 복귀·유치트랙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까?
Q 전문연구요원이 과제 신청 시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Q 전문연구요원이 과제 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Q 전문연구요원이 과제 신청을 할 때 연구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가. 공통사항

<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 관련 >

Q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신청 및 수행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
•**수행 중인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7.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 단, 리더연구는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예외기준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한우물파기 기초연구는 수행 중인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7.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 단,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선정 시, 기 수행 중인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는 2027.12.31.자로 종료해야 하며, 중복 수행 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글로벌 매칭형, 핵심연구(도전형)은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연구개발과제 수(3책 5공)에는 포함)**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기초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도 미포함(개인연구·집단연구와 중복 신청 및 선정 가능. 단, 지역장기연구 수혜자는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Q 수행 중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7. 12. 31.) 최종종료하는 경우, 1인 1과제 수행 조건의 예외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A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신청 및 수행이 가능하므로 현재 수행 중인 개인기초연구사업 과제가 있다면 2027년 신규과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2027. 12. 31. 내에 종료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2027. 6. 1.에 개시하는 리더연구는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할 경우, 리더연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수행 중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7. 12. 31.) 최종종료하는 경우, 1인 1과제 수행 조건의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3책 5공에서도 제외됩니까?

A 아닙니다.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 조건의 예외로만 인정되며, 3책 5공에서는 제외되지 않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책 5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만 제외됩니다.

Q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대 참여가능 과제 수는 몇 개이며, 신규 신청 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합니다**(3책 5공)**. 따라서 신청자는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개수 및 기간을 상세히 검토하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구사업 외 수행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 적용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제를 지원하는 기관(또는 부서)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동일한 연구자라도 지원부처나 주관연구기관이 다르면, 각각 과제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부처나 주관연구기관에 관계 없이 연구자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 '홍길동'이란 연구자가 '서울대학교(A부처 과제)' 및 '주식회사 대한민국(B부처 과제)'으로 과제를 수행 중일 때 지원부처나 주관연구기관에 관계 없이 '홍길동'을 기준으로 3책 5공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2024. 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예외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호에 따라)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제7호*에 따라)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 소규모 신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7년~과제 종료 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의 연구개발과제 수 미포함 적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능 과제 수 제한 시에만 해당되며,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제한 관련 과제 수에는 포함**

※ 상기 개인기초연구 중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의 연구개발과제 수 미포함 적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능 과제 수 제한 시에만 해당되며,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제한 관련 과제 수에는 포함

※ 개인기초연구 외 연평균 연구개발비가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인 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되는지 여부는 소관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 요망

Q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참여자격(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과 무관하게 신규과제 참여가 불가하며, 사후 적발 시 신청 또는 선정취소 처리합니다. 다만, 참여제한 조치가 연구자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제한 관련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에서 조회가능합니다.

Q 미선정 시, 이후 다른 신청 차수에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타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업성격 및 연구비 규모가 다르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 본문의 [Ⅲ-3. 차별성 검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미선정 시, 2차 신규사업의 접수가 가능합니까?

A 1차 미선정 연구자는 2차 신규사업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2단계 평가대상 사업(리더연구 등) 신청자의 경우, 2단계 평가대상이 아니더라도(1단계 평가 탈락) **최종 선정결과 발표 전까지 당해연도 개인연구(과기정통부·교육부 소관) 신규과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요건 관련 >

Q PBS 폐지된 기관은 과제 신청이 불가합니까?

A PBS 폐지 출연연은 기관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되었으며, 개인기초연구는 대학 등 더 많은 연구자에게 돌아가도록 수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PBS 폐지 33개 기관은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과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2차 핵심연구(전략형)는 신청 가능) 해당 기관은 붙임2 PBS 폐지 출연연 목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연구진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A 연구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등으로 구성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요건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등
참여연구자 (일반)	- 교원(전임·비전임), 학·석·박사급 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 등 - 연구책임자와 소속기관이 다른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 (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로 증빙)
학생연구자	-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포함) ※ 휴학생은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 **연구책임자보다 높은 직급의 연구자가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은 권장하지 아니함.**

※ 과기부 개인기초연구사업은 '단독연구'로만 신청가능하며, 연구책임자 1인 + 참여연구자(일반) 다수로 구성 가능

Q 연구과제 구성 시 공동연구원(참여연구자(공동)) 포함이 가능합니까?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경우 2025년부터 공동연구 연구형태가 폐지되어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연구자(공동)(구. 공동연구원)을 포함할 수 없으며, 단독연구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비전임 교원(연구원)도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비전임 교원(연구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사업(리더연구, 핵심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 수행 중에는 주관연구기관과 근로계약(연구참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신진연구는 비전임 교원(연구원) 신청 불가

※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은 과제 신청 전 주관연구기관과 고용일자, 인건비, 처우 등에 협의(과제 선정을 전제로 고용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완료 후 신청. 단, 연구개시일('27. 3. 1) 기준 고용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 본문 참조

Q 전임교원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A 매년 실시하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통계조사 기준과 동일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①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② 신청마감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③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④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고 교양교육 등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강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HK, 중점연구소 사업 등)의 경우도 포함
※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가능

□ **국·공립대 기금교수:**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교원
②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근무 계약교원

※ 전임교원 인정 제외대상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②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또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③ 학교교육·지도, 학문연구 및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
④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Q 인문사회 전임교원(연구원) 또는 비전임교원(연구원)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연구계획서의 주제 및 내용이 이공분야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도 전임교원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A 국·공립대학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보수 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한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 교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 핵심연구(한우물파기 기초연구)·신진연구(유형B,유형A,지역장기연구)·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복귀·유치) 신청 시, 출산·육아 휴직기간으로 인해 박사학위 취득 후 "한우물파기 기초연구는 15년 / 신진연구 및 세종과학펠로우십은 7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A 출산·육아 휴직기간은 박사학위 취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청 시 경력, 역량 증빙자료(출산육아 휴직기간 박사학위 취득 제외 확약서)를 IRIS [첨부파일] 탭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당시 소속기관 내부 승인공문을 바탕으로 출산·육아 휴직기간을 확인한 후 확약서 작성(확약서 서식은 신청서식 내에 있는 '경력, 역량 증빙자료' 활용)

※ 관련 증빙서류는 연구재단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주관연구기관이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IRIS [첨부파일] 탭에 업로드

Q 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외국인 연구자가 국내 소속기관의 연구자로 등록 및 근로계약(연구참여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은 외국 국적 소지자 신청 불가

Q 외국기관 소속 내·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외국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내·외국인 연구자는 개인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참여연구자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내기관의 외국소재 분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도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Q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은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복귀·유치)에 한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 복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이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해야 하고, 해당 박사 전문연구요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연구기간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A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자율선택		연구기간 고정				
사업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신진연구(유형B)	신진연구 (유형A)	리더연구 (유형B,A)	핵심연구 (도약형)	핵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진연구 (지역장기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복귀·유치)
예시	1~5년	1~3년	9년(5+4)	3년	10년(5+5)	10년(5+5)	5년

※ "+"는 단계 구분을 의미함.

Q 민간연구소도 연구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민간연구소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만 인정됩니다.

※ 단, [1차]신진연구(지역장기연구) 및 [2차]핵심연구(전략형)은 제외

Q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일반병원의 연구원인 경우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일반병원 소속 연구자이며 병원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1차]신진연구(지역장기연구) 및 [2차]핵심연구(전략형)은 제외

Q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연구개시일 기준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불가합니다. 연구개시일 기준 소속 예정기관이 있을 시, 소속 예정기관과 고용계약을 사전에 협의하여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신청가능 여부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복귀·유치)의 경우 별도 세종과학펠로우십 QnA 확인 필요

< 신청서류/접수방법 관련 사항 >

Q 연구과제의 차별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 차별성 검토의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 본문의 [Ⅲ-3. 차별성 검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영어로 신청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됩니까?

A 국문요약문을 제외한 연구계획서는 영문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단,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유치트랙)은 영문계획서로만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Q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분량 초과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평가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크기나 줄 간격, 자간 등은 자유롭게 하시되 가독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획서 서식을 임의로 삭제 및 추가하실 수 없습니다.

Q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 시, 최근 5년 이내 기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반영하여 제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A 대표적 연구실적은 최근 5년인 2022. 1. 1. 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이 가능하나, **성별에 관계 없이 연구자 본인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2022. 1. 1. 이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을 2022. 1. 1. 전으로 반영**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2. 1. 1.이후에**

해당하는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2022. 1. 1. 이후가 아닌 2021. 1. 1. 이후 실적부터 제출이 가능하며,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서식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증빙서류가 없거나 인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실적 제출 시 해당 실적은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은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 서식의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는 학생연구자까지 모두 서명해야 합니까?

A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계획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주관연구기관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주관연구기관 소속 학생연구원도 작성 필요).

Q 각 접수기간(연구자 접수·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A 신청기간과 절차는 모든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미승인과제에 대해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Q 첨부파일 제출 전·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A ① 손상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숨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및 기본폰트 외 유료·번들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PDF변환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로드 파일 전체 용량이 2GB(각 첨부파일별 용량은 5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PDF 변환 실패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사항

1. 파일명은 특수문자를 넣지 않으며, 자소분리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한다.
2. 연구계획서는 권장 폰트로 작성한다. (제목-HY헤드라인M, 본문-휴먼명조, 표-맑은고딕)
3. 파일에 DRM을 적용하거나 암호화하지 않는다.
4.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읽기, 저장, 미리보기, 인쇄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5.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와서 작성하는 경우 UTF-8로 인코딩한다.
6. 한글파일을 배포용 문서로 저장하지 않는다.
7. Word 파일의 경우, 문서 내 표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한다.
8. 문서에 인쇄제한, 제한된 보기 설정을 하지 않는다.

② 또한 접수마감 이후 **잘못 등록한 파일은 추가 접수 및 교체가 되지 않으므로, 각 첨부파일 항목에 맞게 해당 파일이 제대로 탑재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의·치·한의대 소속으로 의약학 분야 신청 시 세부전공(교실) 입력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A 의·치·한의대 소속 연구자로서 의약학 분야 과제 신청 시,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에 본인의 소속 "교실"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속교실 정보가 없는 경우, **IRIS 과제신청화면 중 연구원 연차별 참여기간 메뉴에서 전공명을 필수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전공(교실) 정보는 과제의 심사평가위원 섭외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Q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방법이 궁금합니다.

A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은 국가연구자번호가 없는 신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 및 연구자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별첨(매뉴얼)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회원가입 → ② 연구자정보 전환 → ③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기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진행하는 연구자번호 발급·조회·수정 서비스는 2021.8.22.부로 종료

※ 국가연구자번호가 발급되어 있더라도 연구자 전환 동의 필수(연구자 전환 동의를 하지 않은 연구자는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접속 후 연구자 전환 동의 팝업창 내 동의 요망)

Q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A IRIS는 한국연구재단의 e-R&D와 같은 역할을 하고,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은 기존의 한국연구자정보(KRI)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IRIS 회원가입부터 연구자 전환 동의 및 NRI 연구자 정보 등을 미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IRIS를 통한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가 필수입력 정보**이기 때문에 **주관연구기관 총괄담당자가 대표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된 동일인을 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A 동일인을 다수 기관의 대표자 또는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하려면, 소속기관을 다수로 등록하신 후 기관 및 소속정보를 일치시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예: 홍길동의 소속기관을 A대학 및 A대학산학협력단으로 등록한 후, A대학 대표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A대학 홍길동을, A대학산학협력단 대표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A대학 산학협력단 홍길동을 선택). 만약 A대학으로 과제신청을 하는 시점에 A대학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탭에서 A대학산학협력단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를 A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Q 주관연구기관을 대학으로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과제 접수 및 협약 등 절차를 진행할 때 NRI 소속기관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인 직원이 과제관리(검토·승인 등)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IRIS 소속기관 정보가 'A대학'이 아닌 'A대학 산학협력단'으로 등록된 인력은 'A대학 산학협력단'의 기관담당자 권한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대학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는 'A대학 산학협력단' 뿐만 아니라 'A대학'의 과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A대학' 기관담당자도 'A대학' 뿐만 아니라 'A대학 산학협력단' 과제까지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IRIS R&D 업무포털 > R&D 고객센터 > **기본정보 내 협약대표기관 정보가 승인하고자 하는 기관정보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 어디로 해야 합니까?

A 기초연구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므로, **사업 및 평가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IRIS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관련 문의는 IRIS 콜센터(1877-2041, 042-862-1500) 또는 IRIS 홈페이지 게시판**(참여소통>R&D 신문고)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연구자는 과제수행 등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행정지원 업무는 제외)에 대한 참여가 제한됩니다.

- 아울러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여제한 처분 대상이 되므로, 과제 중단 및 수행포기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구비 계상 시 주의사항 >

Q 간접비 분리지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A 2021년부터 개인기초연구사업 공모 시 직·간접비를 분리하여 공고하여 각 연구과제별 유사한 수준의 직접비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신규과제 접수 시에는 직접비만 신청**하며, 선정 이후 **간접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간접비 계상 방법에 대한 내용은 **[Ⅳ-1. 연구비 지급]**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URL: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Q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까?

A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가 아니므로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사용은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은 금지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Q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까?

A 영리기관인 경우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만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영리기관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

※ 개인기초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호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현금계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연구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 인건비만 해당됩니까? 그리고 연구수당을 계상하는 비율에 제한이 있습니까?

A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과제의 지급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의 합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Q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시 사전 내부결재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까?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시행 2026.5.6.)에 따라, 사전 내부결재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회의비(식비) 사용에 대한 사전 결재 요건만 삭제된 것이며, 회의비 사용에 대한 내부결재는 기존 규정(ex. 사용내역 보고 기한 준수 등)에 부합하게 구비하여야 합니다.

Q 외부기관 소속 인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는 회의비 중 식비 계상이 불가합니다.

Q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각 비목별 사용 가능 비용 예시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각 비목별 용도 정의에 부합하며,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 관련 비용들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6.07.) 253~260페이지 참고

Q 발생한 이자를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시행 2026.3.11.)에 따라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 반납이 원칙입니다. 개정된 법령은 시행일 이전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도 적용됩니다.

Q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유의내용
총인건비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의 인건비를 기재 • 연구책임자와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호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현금계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생인건비	• 학위과정생만 기재(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포함) ※ 휴학생은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 주관연구기관 소속이 아니더라도 학생인건비로 계상 가능 ※ 2023년 3월부터 과정별 각 금액 이상으로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함 - 학사과정 월 130만원, 석사과정 월 220만원, 박사과정 월 300만원
연구시설·장비비	• 해당 연구과제 최종 종료 2개월 이전 구입 및 검수를 완료하여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 및 설치비(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연구활동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 불가 * 연구공간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2조(정의)의 연구시설장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범용성 사무공간을 의미함 • 개인기초연구에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 • 사전 내부결재 폐지 및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 인원 내 회의비 사용 가능 ※ 단,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식비) 사용 불가
연구혁신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에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의 연구재료비와 연구활동비의 합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연차별 평균 5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추후 협약 시 안내 예정**
연구수당	•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계상된 연구수당보다 초과집행 불가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 **※ 단계로 구분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연도 협약용계획서(연구수행 기간 모든 연차) 기준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연구종료 시까지 연차별 증액 불가)** • 실제 인건비 사용 금액이 연구계획서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연구수당 또한 실 사용 금액의 20%까지만 지급 가능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일반적인 국외출장비 등이 아닌**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안식년(연구년) 등 파견 비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집행 불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접수 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 계상을 원하는 연구자에 한하여 IRIS 협약변경신청을 통한 승인*을 득한 후 계상·집행 가능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을 위한 IRIS 승인성 협약변경 신청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및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제출 필요
위탁연구개발비	• 개인기초연구는 원칙적으로 계상·집행 불가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조

※ IRIS 신청용/협약용 계획서상 비목별 연구개발비 항목에 연구실안전관리비 및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별도 입력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항목은 주관연구기관이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나. 리더연구

※ 공통사항 FAQ도 함께 확인

Q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A 리더연구는 9년간 수행하므로 연구책임자는 장기간 연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과제 수행 중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합니다(기초연구사업(집단연구 포함)은 중복수행 불가)**. 단, 리더연구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제한 이외의 기타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충분한 연구경력과 리더십, 도전의식과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리더는 행정적인 연구관리를 수행하는 Administrative Leader 보다는 실험실에서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지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Scientific Leader이어야 합니다.

Q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A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해당 리더연구 과제를 총괄하는 연구 및 행정의 책임자로서 다음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 연구수행 및 연구과제 구성·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권한
-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의 결정
- 참여연구원의 임면권 및 인사관리
-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기술료 등의 인센티브 배분결정
- 연구결과의 보고

Q 연구과제의 일부를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위탁연구를 맡기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 국내 위탁연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3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연구시설의 사용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Q 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A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과제의 독립적 운영 권한을 보장해주며, 연구과제의 행정적 지원과 주관연구기관 확약서(본 연구계획서 접수 서식에 포함) 상에 확약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Q 리더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A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수행이 불가능**합니다.

※ 단,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 연구기획사업, 국제공동연구, 산업체 또는 국외로부터의 수탁연구는 참여 가능

Q 현재 리더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행 중인 과제가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기존 리더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신규 리더연구에 선정된 경우, 기존 과제를 종료하고 신규과제 수행

Q 리더연구와 집단연구에 연구책임자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리더연구와 집단연구사업(NRL2.0, 미래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기초연구소(G-LAMP), 글로컬랩,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신청하여 **모두 선정될 경우 집단연구사업만 지원받고 리더연구의 지원은 제외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Q 리더연구 본 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해외전문가평가는 무엇입니까?

A 글로벌 연구리더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해외전문가 평가는 해외우수연구자가 본 평가 대상과제의 연구주제와 연구자의 역량을 서면으로 검토하는 평가입니다. 해외평가는 연구재단의 해외평가위원 풀(pool)을 활용하여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평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외평가 진행을 위해 본 평가대상 연구책임자에게 추후 별도의 영문 연구요약문(2~3페이지) 및 영문 이력서(CV)를 요청드릴 예정이고, 해외평가위원의 평가의견과 평가등급(5단계, Excellent~Poor)을 평가결과에 종합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Q 산업체에서 리더연구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A 리더연구는 대학 교수(전임, 비전임) 외에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Q 리더연구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보직수행이 불가하나 필요 시 승인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행이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됩니까?

A 리더연구는 **연구수행의 전념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구기간 중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보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 시 승인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이 사전검토 후 승인을 하면 보직과 리더연구 수행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소속기관 보직수행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보직수행 내용은 차기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시 성실성 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table>
<tr><th>구분</th><th>기준</th></tr>
<tr><td>승인불가 보직</td><td>기관장(총장, 원장 등), 학장, 처장, BK사업단장, IBS연구단장 등
※ 신규과제 선정 시, 과제 개시 전 해당 보직의 임기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BK사업단장 및 IBS연구단장은 소속기관의 보직은 아니나, 사업목적과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리더연구와 동시수행 불가</td></tr>
<tr><td>승인가능 보직</td><td>승인불가 보직을 제외한 연구 관련 보직 및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보직에 한함</td></tr>
<tr><td>승인조건</td><td>사전 승인 후 보직수행을 허용하며, 연구책임자 제출 서류 및 직전 단계평가 결과 등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보직수행 타당성) 보직수행 사유, 보직 기간 중 연구계획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용
- (단계평가 결과) 아래 기준을 준용하되, 직전 단계평가 시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정성적 검토 후 이를 충족하는 경우 허용
<table><tr><td>검토 기준</td><td>• 계획한 연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고, 연구 수행계획 대비 매우 성실하게 수행하였음.
• 산출된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이 탁월함.
• 연구 결과가 향후 관련 분야의 과학적 지식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거나,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td></tr></table>※ 보직을 기 수행 중인 연구자가 선정된 경우, 연구개시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보직 수행 승인을 받아야 함
※ 1단계 과제는 단계평가 전이므로 전문가(적절성) 검토 등을 거쳐 보직수행을 우선 허용하되, 차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보직수행 허용여부 결정
※ 보직기간이 장기인 경우는 차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수행이 가능하며, 차기 단계 보직수행 승인 재요청 필요</td></tr>
<tr><td>보직 승인 기간</td><td>현재 단계종료일까지 승인</td></tr>
</table>

※ 차기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시, 보직수행 내용을 연구수행의 성실성 측면에서 검토

※ **계속과제 동일 적용**

다.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 공통사항 FAQ도 함께 확인

Q 리더연구와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中 1개)는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리더연구와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中 1개)는 예외적으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동시 신청한 경우 **핵심연구가 선정이 되어도 리더연구의 평가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협약이 보류됩니다.**

※ 리더 평가로 인한 협약 보류 상태 핵심연구 과제에서는 연구비 사용이 일절 불가하며, 핵심연구에서 협약체결 진행 및 연구비를 사용시 리더연구 2차 본 평가 대상에서 자동 제외

[핵심연구(도약형)만 해당]

Q 중견연구 후속과제(중견연계 신진후속 포함)에 선정되어 2027년 종료 예정입니다. 핵심연구(도약형) 지원이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핵심연구(도약형)에만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행 예정이신 연구 규모와 연구책임자의 선택에 따라 지원하시면 됩니다.

Q 신진연구(유형A)에 선정되어 2027년 종료 예정입니다. 핵심연구(도약형) 지원이 가능합니까?

A **불가능합니다.** 신진연구(유형A)는 핵심연구(도약형) 신청 가능 대상이 아닙니다.

Q 기존 수행 학문분야가 아닌 분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핵심연구(도약형)는 학문의 발전과 확장을 장려하는 사업이기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와의 연관성과 발전성을 미루어 보아 연구책임자의 결정하에 수행 학문분야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Q 금년도 핵심연구(도약형)에 지원하여 미선정 된 후 기존 수행 과제의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2028년 종료로 변경될 경우, 차년도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A **불가능합니다.** 핵심연구(도약형)는 **과제당 한 번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7년 핵심연구(도약형)에 지원하지 않고 **2028년으로 연구기간을 연장 신청하여 승인이 완료**되면, 2028년도 핵심연구(도약형) 지원은 가능합니다.

※ '28년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라. 핵심연구(한우물파기 기초연구)

※ 공통사항 FAQ도 함께 확인

Q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청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A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민간연구소의 연구원으로, **2012. 1. 1. 이후 박사학위 취득자(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과제 접수 전에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상의 학위 정보(학위 취득기관/취득연도 등)를 연구개시일(2027. 3. 1.) 기준으로 등록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현재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의 최종 종료시기에 관계 없이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우수연구(리더, 핵심(舊중견포함), 신진, 세종과학펠로우십,생애기본연구(생애첫연구, 기본연구))는 과제의 당해연도 내 최종 종료일(연차/단계종료 제외)이 2027.12.31. 이후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부' 소관 개인기초연구**(통합기초지원, 지역중심혁신지원, 학술연구인재육성(舊 이공학개인기초, 학술연구혁신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는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최종종료일이 2027. 12. 31. 이내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에 선정되어 기존 수행과제를 2027. 12. 31.자 중단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A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에 선정될 경우 2027. 12. 31.까지만 중복수행을 허용하므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는 2027. 12. 31.자로 종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수행 과제를 2027. 12. 31.자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사전안내** 예정입니다. 중복수행 기간은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제한사항에 대한 예외사항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의 예외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에 선정되어 기존 수행과제를 2027. 12. 31.자로 중단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패널티 없이 과제 중단을 할 수 있습니까?

A 네,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선정 시 기존 수행과제와의 중복수행을 당해연도 연말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2027. 12. 31.자로 기존 수행과제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없습니다.

Q 신청 가능한 분야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A **분야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연구 주제를 다루는 분야(신생·미개척분야 포함)이기만 하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신진연구(유형B, 유형A, 지역장기연구)

※ 공통사항 FAQ도 함께 확인

Q 신진연구 신청 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이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2022.1.1. 이후 임용)의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 외 신청자격도 충족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공)립*·민간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은 '최초 조교수 이상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폐지 출연연 신청 불가

Q 신진연구 신청 시,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 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A **(5년 기준)** 2022.1.1. 이후에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A **(전임강사 경력)** 고등교육법 개정(2011.7.21.)으로 전임강사의 명칭이 폐지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수로 인정하며, 해당 경력도 함께 인정합니다.

A **(퇴직·휴직기간)** 퇴직, 휴직기간은 '5년 이내' 기준에 포함되며, 출산·육아휴직에 의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A **(임용대학 기준-전문대학 임용 후 4년제 대학으로 새로 임용)** 최초 대학 교원의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문대학 임용일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A **(임용대학 기준-외국대학)** 외국대학의 교수경력은 신청요건의 교원 임용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대학에 재직하다가 국내대학에 임용된 경우에는 국내대학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A **(확약서 제출방법)** 신청 시, 신청서식에 포함된 **연구자 과제참여 확약서**의 **최초 조교수 이상 직위 임용 5년 이내 확약서**를 작성하여 IRIS [첨부파일] 탭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Q 신진연구 자격요건에서 "만 39세 이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조건으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박사학위 취득예정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연구개시일(2027. 3. 1.) 전에 박사학위 취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상의 학위 정보(학위 취득기관/취득연도 등)를 연구개시일(2027. 3. 1.) 기준으로 기재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9세 초과인 자 중 연구개시일(2027. 3. 1.) 기준으로 박사학위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

Q 신진연구에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가능 직위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신진연구(유형B, 유형A)는 전임교원 및 정규직 연구원, 신진연구(지역장기연구)는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신진연구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전임교원 및 정규직 연구원을 증빙하는 연구자 과제참여 확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확약서 서식은 신진연구(유형B, 유형A, 지역장기연구) 신청서식 내에 있는 '연구자 과제참여 확약서' 활용

A **(유의사항)** 해당 자료는 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 가능하며, 평가 중 허위 작성 사실 발각 시 평가 중단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에 허위 작성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과제중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 제5호에 의거 제재처분이 가능하니 허위 작성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확약서 제출방법)** 연구책임자 접수 기간 내 IRIS 시스템 상 신청용 연구계획서 접수의 [첨부파일] 탭에 탑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 주관연구기관 직인 필수, 연구책임자 직인은 서명대체 가능

Q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구개시일(2027. 3. 1.) 전에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아직 주관연구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시일(2027. 3. 1.) 전에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구개시일(2027. 3. 1.) 기준 소속 예정기관과 고용계약을 사전에 협의하여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수행 중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신진연구(유형B) 우대사항에 해당합니까?

A 그렇습니다.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해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수행 중 전임교원으로 신분 변동된 연구책임자가 정상종료(5년)되는 해에 과제를 신청한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하여 신진연구(유형B) 신규과제의 평가 점수가 '추천' 이상(온라인 서면평가는 80점 이상)인 경우 선정됩니다. 2027년 신진연구(유형B) 신규과제의 경우 우대 대상은 **2022년 선정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연구책임자 중 전임교원으로 신분 변동된 연구자**입니다. 사전검토 시 수행 중 이력 확인 예정이오니 **관련 증빙서류는 연구재단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NRI 내 연구책임자 학력/경력 정보를 필수 입력해야 합니까?

A NRI 내 입력한 연구책임자 학력/경력 정보가 사전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접수 기간 내 입력하지 않은 경우 사전검토 시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는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신진연구 수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신진연구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수혜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27년도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진연구를 **기 수행한 연구자도 신진연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역장기연구는 연구시설·장비 구축이 필수입니까?

A 네, 지역장기연구는 연구초기(1~2년차)에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비 구축 계획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A 본 연구 내용은 1~2차년도 구축 예정인 연구시설・장비(총 3억원 이상)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Q 지역장기연구 선정되어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시설·장비만 구축 가능합니까?

A 아닙니다.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IRIS를 통한 '(승인통보)협약변경신청'을 통해 승인된 후 구매 가능합니다.

A **(유의사항)** 단, 지역장기의 경우 1~2차년도에 연구시설・장비비 총 3억원*을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계상한 연구시설・장비비 3억원을 2차년도 종료일까지 집행해야 합니다.

* 최소 3억원 이상 계상해야 하며 필요시 증액 가능

※ 1~2차년도에 계상한 총 3억원의 연구시설·장비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Q 지역장기연구 수행 중 이직할 경우 계속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A 지역장기연구는 이직한 곳이 **'국내 지역대학'** 일 경우에만 계속 수행이 가능합니다. **국내 지역대학 외 기관*** 이직 시 **과제 중단이 불가피**하며, 해당 원칙 위반에 따른 과제중단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행포기'** 로 간주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해외기관, 지역 외 기관(4대 과기원 및 포항공대 포함), 민간연구소 및 PBS 적용기관 포함

Q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 지역장기연구에 신청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기존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계실 경우, 지역장기연구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장기연구에 선정되거나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의 기수혜자일 경우, 2027년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 신규과제에 지원 불가합니다.

바.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 공통사항 FAQ도 함께 확인

Q 세종과학펠로우십 자격요건에서 "만 39세 이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조건으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박사학위 취득예정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연구개시일(2027. 3. 1.) 전에 박사학위 취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상의 학위 정보(학위 취득기관/취득연도 등)를 연구개시일(2027. 3. 1.) 기준으로 기재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9세 초과인 자 중 연구개시일(2027. 3. 1.) 기준으로 박사학위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

※ 박사학위 취득예정자가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학위 취득예정기관/취득연도 미등록 시 신청자격 미충족으로 사전검토에서 탈락 가능

Q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면**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과제 신청 전에 소속(예정)기관과 협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 자녀수당(해당 시)은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고용계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세종과학펠로우십 연구책임자 인건비는 고용계약 상의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신청하고자 하는 인건비 총액으로 고용계약 체결(또는 수정)이 가능한지 소속(예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 신청 오류 예시

고용계약상 인건비 총액	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	자녀수당	신청가능여부	사유
40,000천원	65,000천원	미신청	불가	고용계약상 인건비 총액을 초과
66,800천원	66,800천원	1,800천원	신청가능	기준 충족

Q 세종과학펠로우십 신청 전에 소속기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까?

A 신청 시 연구를 수행할 소속(예정)기관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지원대상의 불안정한 고용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소속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주관연구기관이 없어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이 없는 경우 IRIS 회원정보에서 소속기관을 '한국연구재단'으로 변경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실제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연구개시일 이후 채용 유예기간 동안은 연구비 집행이 불가하며, 해당 기간의 인건비는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2027. 8. 31.까지 주관연구기관 미확정 시 선정 취소(2027. 9. 1.자 채용까지 인정)

* 주관연구기관 확정 사유 등을 포함한 공문 송부

[참고] IRIS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소속기관을 변경하는 방법

1. IRIS 로그인 후, 중앙 상단의 '성명(국가연구자번호)' 부분을 클릭 > 회원정보 내 기관정보 부분에서 소속기관 검색창에서 '(재)한국연구재단' 검색 후 선택
2. 소속부서는 '세종과학펠로우십', 사번은 '00000'를 입력(숫자 0을 5번 입력)

Q 과제 수행 중 전임교원 및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될 경우, 과제 계속 수행이 가능합니까?

A 전임교원 및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된 기관이 **연구 과제 관리가 가능한 기관이라면** 과제 이관 신청 후 **계속 수행이 가능**합니다.

Q 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인건비/그 외 연구비 간 변경이 가능합니까?

A 총연구비 내에서 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 그 외 연구비 간 변경이 가능하며, 비목 변경의 경우, 통보성 협약변경으로 신청바랍니다.

[예시1] 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 감액

구분	실제 고용계약상 인건비 총액	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	그 외 연구비	인건비계상률	1차년도 연구비 총액 (12개월 기준)
신청	80,000천원	65,000천원	35,000천원	81.25%	100,000천원
연구책임자 인건비 감액	80,000천원	50,000천원	50,000천원	62.5%	100,000천원

[예시2] 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 증액

구분	실제 고용계약상 인건비 총액	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	그 외 연구비	인건비계상률	1차년도 연구비 총액 (12개월 기준)
신청	80,000천원	40,000천원	35,000천원	50%	75,000천원
연구책임자 인건비 증액	80,000천원	65,000천원	10,000천원	81.25%	75,000천원

Q 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 계상률 최소 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까?

A 해당 조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최소 계상률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연구책임자 연평균 인건비 최대 65백만원 규정은 유지됩니다.

Q 연구개발비 신청 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 계상이 가능합니까?

A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은 연구수당 계상이 불가합니다. 다만, 연구개시일 기준 신분변동(비전임→전임)에 한하여 협약 체결 당시에만 계상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협약 기준보다 증액은 불가합니다.

Q 자녀수당 신청 시 사전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A 연구책임자는 **과제 신청 시 자녀수당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 인건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5년부터 주관기관의 내부규정 및 지침에 따라 자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신청 시 추가항목(자녀수) 입력 필수**

Q 과제 수행 중 자녀가 출생한 경우, 자녀수당 신청이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자녀수당이 변경되는 경우 IRIS 협약변경으로 추가항목(자녀수)을 필수적으로 입력하시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Q 자녀수당은 가족수당으로만 지급되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세종과학펠로우십 자녀수당은 연구책임자 인건비에 추가되는 금액으로 세부적인 지급 형태는 주관기관의 내부규정 및 지침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Q 과제 수행 중 6개월 이상 국외파견이 가능합니까?

A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사업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총 연구기간(5년) 중 최대 1년까지만 국외파견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까지는 국외파견 기간을 단계별 6개월로 제한하였으나 2022년도부터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단계 구분 없이 최대 1년까지 파견연구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출입국 기록 기준으로 1년(365일) 이내로 제한

Q 연구계획서는 총 연구기간(5년)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까?

A 연구계획서는 **총 연구기간 5년에 대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총 연구기간은 고정됨.

Q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에서 회의비 계상이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2023년부터 회의비 계상 및 집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Q 전문연구요원이 과제 신청 시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A 2026. 12. 4.(금)까지 접수(예정)인 전문연구요원 박사 및 연구소장(지도교수)은 **'전문연구요원 과제 부여 확인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재단에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신청 불가하며, 미제출한 전문연구요원이 신청 시 선정 취소 가능

Q 전문연구요원이 과제 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A 복무기간 동안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이므로, 과제 신청 시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계획서 및 대표적 연구실적은 연구과제를 부여받는 박사 전문연구요원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 과제는 3책 5공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과제 신청 및 협약 시 연구과제 부여 확인서 필수 제출

* 연구책임자(소속 연구소장) 기준으로 작성 시, 해당 실적은 평가대상에 미포함

Q 전문연구요원이 과제 신청을 할 때 연구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A 복무기간 동안은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므로 그 외 연구비 최대 35백만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복무종료일이 포함된 연차는 그 외 연구비 최대 35백만원 외 복무종료일 후부터 인건비를 일할로 계상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예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 복무기간이 ~2028.8.31.인 경우

2027년도 선정	연차별 연구기간	최대 신청 가능 직접비		연차별 복무기간 포함 여부
		연구책임자 인건비	그 외 연구비	
1년차	2027.3.1.~2028.2.29.	-	35,000천원	**포함**
2년차	2028.3.1.~2029.2.28.	**32,232천원***	35,000천원	**포함**
3년차	2029.3.1.~2030.2.28.	65,000천원	35,000천원	미포함
4년차	2030.3.1.~2031.2.28.	65,000천원	35,000천원	미포함
5년차	2031.3.1.~2032.2.29.	65,000천원	35,000천원	미포함

* 12개월 기준 신청 가능한 연구책임자 인건비는 최대 65백만원이므로, 복무종료일부터 해당 연차의 남은 기간이 181일인 경우 연구책임자 인건비는 **65백만원/365일*181일이므로 최대 32,232천원(천원 미만 절사)까지 신청 가능**

[예시2] 복무기간이 ~2028.12.31.인 경우

2027년도 선정	연차별 연구기간	최대 신청 가능 직접비		연차별 복무기간 포함 여부
		연구책임자 인건비	그 외 연구비	
1년차	2027.3.1.~2028.2.29.	-	35,000천원	**포함**
2년차	2028.3.1.~2029.2.28.	**10,506천원***	35,000천원	**포함**
3년차	2029.3.1.~2030.2.28.	65,000천원	35,000천원	미포함
4년차	2030.3.1.~2031.2.28.	65,000천원	35,000천원	미포함
5년차	2031.3.1.~2032.2.29.	65,000천원	35,000천원	미포함

* 12개월 기준 신청 가능한 연구책임자 인건비는 최대 65백만원이므로, 복무종료일부터 해당 연차의 남은 기간이 59일인 경우 연구책임자 인건비는 **65백만원/365일*59일이므로 최대 10,506천원(천원 미만 절사)까지 신청 가능**

사.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유치트랙)

※ 공통사항 FAQ도 함께 확인

Q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유치트랙) 신청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A **해외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20. 1. 1. 이후 취득) 또는 만 39세 이하(1987. 1. 1.이후 출생)인, 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자 또는 국(공)립·민간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과제 접수 전에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상의 학위 정보(학위 취득기관/취득연도 등)를 연구개시일(2027. 9. 1.) 기준 정보로 등록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육아 휴직기간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단, 신청 시 경력, 역량 증빙자료의 출산육아 휴직기간 박사학위 취득 제외 확약서를 IRIS [첨부파일]탭에 업로드하여야 함)

※ 외국 국적 소지자는 국내(대한민국)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신청 가능

Q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의 취지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대한민국)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외국 소재 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세종과학펠로우십을 포함한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외국 소재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소재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정규직으로 신분이 변동되어도 계속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A 비전임에서 전임으로 신분 변동 시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전임으로 신분이 변동되어도 과제의 계속 수행이 가능합니다.

Q 세종과학펠로우십 신청 전에 소속기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까?

A 신청 시 연구를 수행할 소속(예정)기관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유치트랙) 국내 기관과의 네트워크 부재 등으로 소속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주관연구기관이 없어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이 없는 경우 IRIS 회원정보에서 소속기관을 '한국연구재단'으로 변경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시일 이내에 실제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 2027. 8. 31.까지 주관연구기관 미확정 시 선정 취소(2027. 9. 1.자 채용까지 인정)

* 주관연구기관 확정 사유 등을 포함한 공문 송부

[참고] IRIS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소속기관을 변경하는 방법

1. IRIS 로그인 후, 중앙 상단의 '성명(국가연구자번호)' 부분을 클릭 > 회원정보 내 기관정보 부분에서 소속기관 검색창에서 '(재)한국연구재단' 검색 후 선택
2. 소속부서는 '세종과학펠로우십', 사번은 '00000'를 입력(숫자 0을 5번 입력)

Q 과제 수행 중 6개월 이상 국외파견이 가능합니까?

A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사업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총 연구기간(5년) 중 최대 1년까지만 국외파견이 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의 파견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시 명시하였으며, 1년의 파견 이후 국내 연구에서 필요성이 명백하다면 추가 신청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 연구개발비 신청 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 계상이 가능합니까?

A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유치트랙)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협약 기준보다 증액은 불가합니다.

Q 연구개발비 신청 시, 복귀·유치트랙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까?

A 직접비(1억원 이내) 내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계상가능합니다.

※ 주관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연구책임자 인건비를 초과할 수 없음

Q 전문연구요원이 과제 신청 시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A 2026. 12. 4.(금)까지 접수(예정)인 전문연구요원 박사 및 연구소장(지도교수)은 **'전문연구요원 과제 부여 확인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재단에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신청 불가하며, 미제출한 전문연구요원이 신청 시 선정 취소 가능

Q 전문연구요원이 과제 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A 복무기간 동안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이므로, 과제 신청 시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계획서 및 대표적 연구실적은 연구과제를 부여받는 박사 전문연구요원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 과제는 3책 5공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과제 신청 및 협약 시 연구과제 부여 확인서 필수 제출

* 연구책임자(소속 연구소장) 기준으로 작성 시, 해당 실적은 평가대상에 미포함

Q 전문연구요원이 과제 신청을 할 때 연구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A 복무기간 동안은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며, 직접비는 최대 35백만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무종료일이 포함된 연차는 최대 35백만원 외 복무종료일 후부터 인건비를 일할로 계상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예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복무기간이 ~2029.2.28.인 경우

2027년도 선정	연차별 연구기간	최대 신청 가능 직접비	연차별 복무기간 포함 여부
1년차	2027.9.1.~2028.8.31.	35,000천원	**포함**
2년차	2028.9.1.~2029.8.31.	32,767천원* + 35,000천원	**포함**
3년차	2029.9.1.~2030.8.31.	100,000천원	미포함
4년차	2030.9.1.~2031.8.31.	100,000천원	미포함
5년차	2031.9.1.~2032.8.31.	100,000천원	미포함

* 12개월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연구비는 복무종료일부터 해당 연차의 남은 기간이 **184일**인 경우, **65백만원/365일*184일이므로 최대 32,767천원까지 추가 신청 가능**

붙임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지 PBS 폐지 정부출연연구소 목록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23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 중앙행정기관 직할 정부출연 연구기관(10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뇌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붙임3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등 세부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18.>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 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 단서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 단서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카. 연구혁신비	연구개발기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라목 또는 아목(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비용

2. 간접비(제19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간접비(제19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 외의 연구개발기관)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제2호가목의 비용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관련 비용. 다만, 다음의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에 소속된「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2)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우수학생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나. 연구지원비	제2호나목의 비용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 또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 다만, 다음의 비용은 제외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비용 2)「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리모델링 등을 위한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제2호다목의 비용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비용,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2의3. 위 표 제1호카목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의4. 다음 각 목의 비용은 간접비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발생한 배상금·위약금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 비용
   다.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의 관련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2의5.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붙임4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시행 2026. 5. 6.]

※ 향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내용에 따라 적용 예정
※ 과제 개시일이 아닌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총연구비 고정하며, 이후 간접비 변동분은 직·간접비 금액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7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2.55
	한국기계연구원	13.1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9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4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65
	한국식품연구원	23.1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6.4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03
	한국원자력연구원	22.89
	한국재료연구원	10.30
	한국전기연구원	14.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3.78
	한국천문연구원	19.0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2.1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0
	한국한의학연구원	22.4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9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6.02
	한국화학연구원	20.09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녹색기술연구소	16.3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9.26
	극지연구소	8.0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4.93
	세계김치연구소	17.77
	안전성평가연구소	17.34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특정연구기관 (12개)	광주과학기술원	26.49
	기초과학연구원	5.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8.84
	울산과학기술원	25.6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18
	한국과학기술원	23.50
	한국과학창의재단	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99
	한국세라믹기술원	20.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19
	한국원자력의학원	27.0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7.24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5개)	고등과학원	19.7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1.67
	나노종합기술원	16.39
	한국뇌연구원	29.70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6.11
	한국광기술원	20.30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0.70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1.88
	한국소재융합연구원	25.85
	한국자동차연구원	18.30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4.13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2.13

4. 대학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가천대학교	25.15	가톨릭관동대학교	23.87
가톨릭대학교	21.15	강남대학교	12.79
강원대학교	20.20	건국대학교	27.04
건양대학교	28.35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1.05
경기대학교	24.42	경남대학교	26.93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경북대학교	24.83	경상국립대학교	23.62
경성대학교	20.09	경운대학교	7.30
경인교육대학교	12.61	경일대학교	14.49
경희대학교	26.43	계명대학교	22.78
고려대학교	24.34	고신대학교	29.00
광운대학교	25.70	광주대학교	17.31
광주여자대학교	7.39	국립강릉원주대학교	21.95
국립경국대학교	25.55	국립공주대학교	29.87
국립군산대학교	17.8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27.45
국립목포대학교	17.92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2.66
국립부경대학교	21.04	국립순천대학교	22.12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7.20	국립창원대학교	24.33
국립한국교통대학교	24.23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89
국립한밭대학교	27.25	국민대학교	26.0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5.00	극동대학교	12.99
나사렛대학교	15.06	남부대학교	16.24
남서울대학교	25.24	단국대학교	25.31
대구가톨릭대학교	28.42	대구대학교	20.10
대구한의대학교	26.17	대전대학교	24.70
대진대학교	22.85	덕성여자대학교	25.19
동국대학교	23.75	동덕여자대학교	22.67
동명대학교	28.42	동서대학교	27.84
동신대학교	20.13	동아대학교	25.25
동양대학교	7.91	동양미래대학교	5.00
동의대학교	24.45	명지대학교	23.06
명지전문대학	5.00	목원대학교	17.55
배재대학교	26.69	백석대학교	13.87
부산가톨릭대학교	27.16	부산대학교	18.46
부산외국어대학교	23.25	부천대학교	21.56
북한대학원대학교	5.00	삼육대학교	25.82
상명대학교	27.89	상지대학교	27.44
서강대학교	27.87	서경대학교	16.4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8.00	서울교육대학교	12.82
서울대학교	27.01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20.00
서울시립대학교	27.97	서울여자대학교	29.70
서원대학교	20.58	서일대학교	5.00
선문대학교	26.64	성공회대학교	9.38
성균관대학교	26.30	성신여자대학교	25.20
세명대학교	16.70	세종대학교	25.77
수원대학교	29.87	숙명여자대학교	26.47
순천향대학교	23.86	숭실대학교	26.09
신라대학교	26.76	아주대학교	28.00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안양대학교	18.99	연세대학교	28.84
영남대학교	20.32	영산대학교	27.44
용인대학교	5.00	우석대학교	26.71
우송대학교	11.04	울산과학대학교	5.00
울산대학교	24.14	원광대학교	29.12
위덕대학교	5.00	육군사관학교	14.96
을지대학교	23.63	이화여자대학교	27.55
인덕대학교	5.00	인제대학교	21.88
인천대학교	30.90	인하공업전문대학	19.05
인하대학교	25.15	전남대학교	20.43
전북대학교	22.32	전주대학교	18.46
제주대학교	26.94	조선대학교	29.00
중부대학교	16.17	중앙대학교	22.21
중원대학교	30.07	차의과학대학교	28.84
창신대학교	29.40	청주대학교	17.24
춘천교육대학교	5.00	충남대학교	21.71
충북대학교	21.12	평택대학교	5.00
포항공과대학교	19.74	한경국립대학교	22.97
한국공학대학교	19.49	한국교원대학교	9.7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2.86	한국농수산대학교	13.6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81	한국예술종합학교	26.49
한국외국어대학교	25.87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20.3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6.46	한국체육대학교	15.51
한국항공대학교	25.10	한남대학교	20.65
한동대학교	26.32	한라대학교	15.38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5.04	한림대학교	21.16
한서대학교	22.78	한성대학교	15.30
한신대학교	12.72	한양대학교	23.36
한양여자대학교	13.97	협성대학교	16.19
호남대학교	17.27	호서대학교	25.79
홍익대학교	18.01		

5. 기타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기타비영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8.40
	삼성서울병원	22.03
	키엘연구원	18.56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7.10
	한국나노기술원	17.55
	한국선급	24.52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6.80

붙임5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책임)전문위원(CRB/RB)분야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명	RB(Review Board) 분야명
자연과학단	수학	대수학/이산수학/정보수학
		해석학
		위상수학/기하학
		응용수학
		확률/이론통계
		응용통계
	물리학	입자/장물리/천체물리
		핵물리/플라즈마
		통계물리/생물물리/복합물리
		광학/원자분자물리
		응집물질물리1(유전체/강상관계)
		응집물질물리2(반도체/자성체)
		응집물질물리3(나노/초전도체)
	지구과학	지구/지질과학
		대기과학
		해양/극지과학
		천문/우주과학
	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생화학/화학생물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재료화학
		고분자화학
		전기화학/광화학/융합화학
생명과학단	기초생명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명정보학
		생화학
		생리학
		식물학
		미생물학
		분류/생태/환경생물학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명	RB(Review Board) 분야명
	분자생명	분자생물학
		신경생물학
		발생생물학
		구조생물/생물물리학
		유전자발현
		면역학
		감염생물학
		노화생물학
		암생물학
	기반생명	식량작물/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의학
		수산학
		식품학
		영양학
		생물공학
의약학단	기초의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해부·생리의학
		약리의학
		재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응용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호흡기의학
		병리/진단의학
		방사선의학
		생식발달의학
		예방 및 직업환경의학
		외과/응급·중환자 및 주술기의학
		근골격계 및 재활의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건강증진의학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명	RB(Review Board) 분야명
	치의학	두개안면 생물학
		두개안면 형태/병리/재생학
		예방보건/재료/응용기초
	한의학	기초한의학
		응용한의학
	약학	기초생명약학
		응용생명약학
		약품화학 및 천연물
		물리약학 및 약제학
	간호학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공학단	기계	설계생산
		열공학
		유체공학
		응용역학
		자동화계측
		재료가공
	건설/교통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설비환경
		지반공학
		수공학
		교통/측량
		토목구조/시공/재료
		건축시공/재료
		건축구조
	소재	금속재료
		반도체/전자재료
		세라믹재료
		나노융복합소재
	화공	화학공정
		화공재료공정
		생물공정
		섬유공학
		고분자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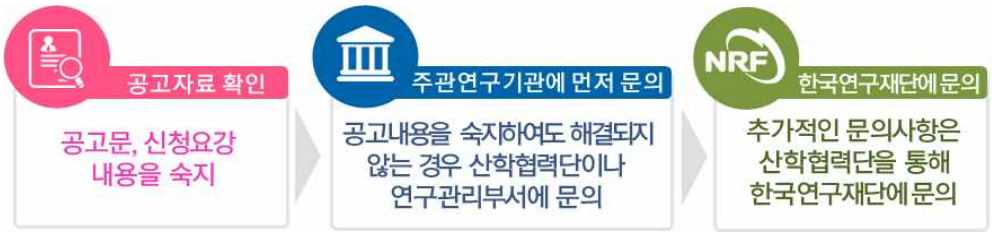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명	RB(Review Board) 분야명
ICT·융합 연구단	전기/전자	전력기술/기기
		계측/제어
		집적회로
		반도체소자
		광소자
		신호처리
		전기/전자 기반 융합
	통신	전자기/통신부품
		통신(원천)
		통신(응용)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기반 융합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처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기반 및 학습/추론)
		인공지능(지각/인식)
		인공지능(응용)
		영상/그래픽스
		데이터베이스/정보처리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반 융합
	바이오·의료융합	의료기기
		바이오센싱 및 나노바이오물질
		바이오소재
		뇌인지과학
	에너지·환경 융합·복합	차세대에너지 융합
		환경
	다학제 융합·복합	산업공학
		교차및초학제융합
		생활과학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 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시스템 관련 문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가입·이용 관련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운영단 ☎ 1877-2041, 042-862-1500
  - ○ IRIS 홈페이지 > 참여소통 > R&D 신문고 게시판 활용

□ 사업 관련 문의처: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팀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공통번호) 6392, 6393, 6394, 6397

리더연구		핵심연구					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유형B	유형A	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유형B	유형A	지역장기 연구	국내	복귀·유치
6813		6809		6814	6802	6805	6808	6802		6803	

※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평가 포함)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신진사업팀 (☎ (042) 865-3641, 3484, 3481)로 문의

□ 평가 관련 문의처: 선정평가 절차·방법·결과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분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리더연구	유형B(Top-tier)	6558	6532	6059	6543	6568
	유형A					
핵심연구	유형C	6553	6533	6057	6543	6568
	유형B	6552	6534	6059	6542	6565
	유형A	6557	6534	6053	6543	6549
	도약형	6552	6538	6054	6545	6565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6557	6533	6053	6541	6549
신진연구	유형B	6553	6532	6054	6545	6566
	유형A	6559	6532	6057	6542	6568
	지역장기연구	6559	6532	6054	6542	6575
세종과학 펠로우십	국내트랙	6558	6538	6055	6541	6575
	복귀·유치트랙	6558	6534	6055	6541	6566